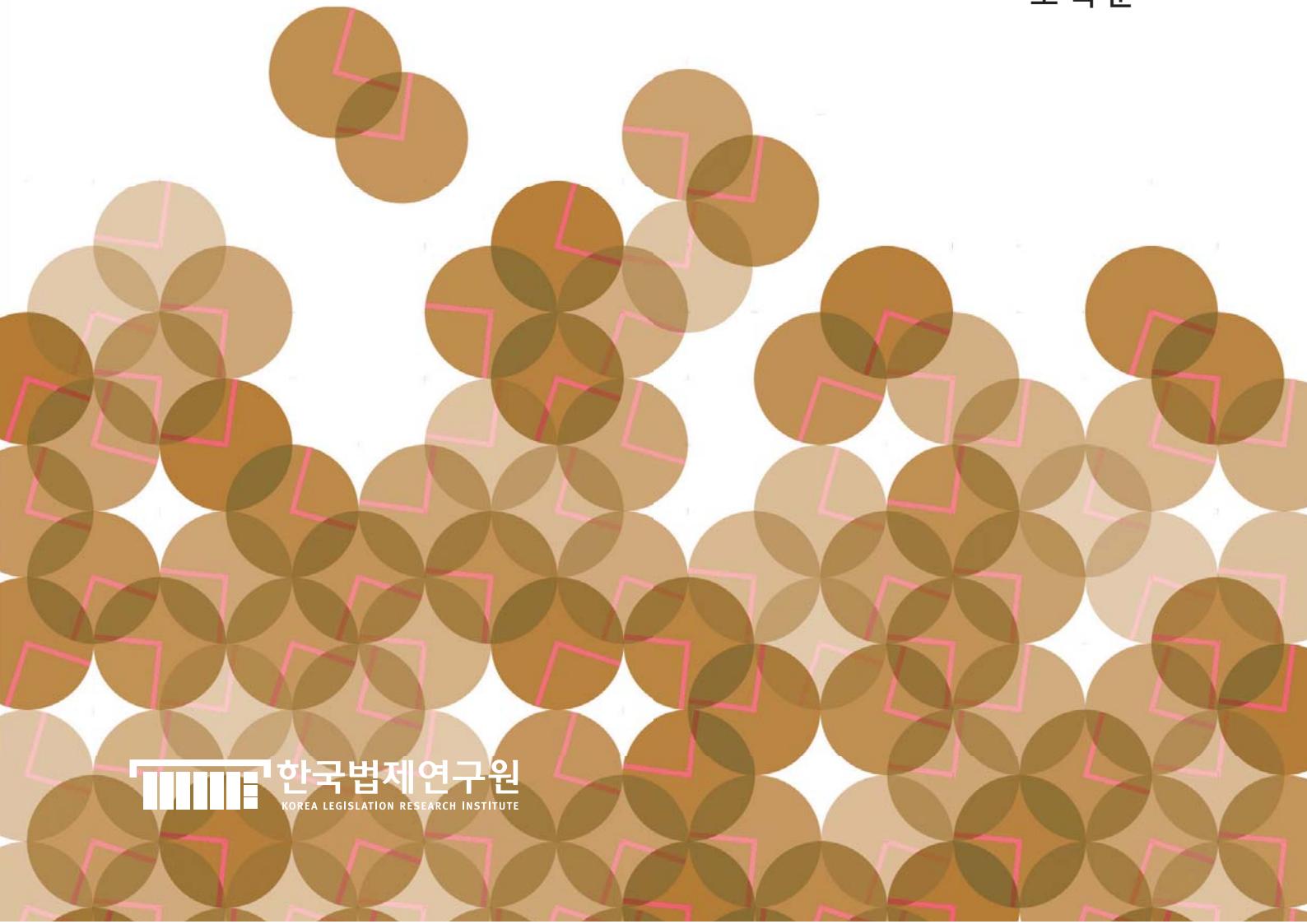


KLRI · UNCITRAL Joint Research(II) : Perspectives and Trends

UNCITRAL W/G 1 의 소규모기업법제에 관한 논의 분석과 전망(1)

노 혁 준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4-20-④-2

KLRI · UNCITRAL Joint Research(II) : Perspectives and Trends
**UNCITRAL W/G I 의 소규모기업법제에
관한 논의 분석과 전망(1)**

노 혁 준



KLRI · UNCITRAL Joint Research(II) : Perspectives and Trends
**UNCITRAL W/G 1 의 소규모기업법제에
관한 논의 분석과 전망(1)**

Analysis on the Discussion in the UNCITRAL
over MSMEs(UNCITRAL Working Group 1)

연구자 : 노혁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ho, Hyeok joon

2014. 11. 30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소규모기업(MSMEs: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은 영세기업과 소기업 및 중기업을 포괄하는 개념인바, 국내총생산, 고용 등 각 국가의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인 경우 소규모기업은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규모기업은 경제적, 규제적, 재정적 장벽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UNCITRAL은 소규모기업이 직면하는 법제도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이 소규모기업에 관한 분과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분과위원회는 소규모기업의 창업에서 시작하여 성장, 폐업에 이르기까지 그 일생을 거쳐서 이를 규율할 법제에 대하여 논의하게 될 것이다.
- 이 연구는 소규모기업법제 관련 제I 분과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다루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한국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소규모기업의 역할 및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기업가적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뿐 아니라 법제개선도 논의해 왔다. UNCITRAL에서의 논의는 우리나라에서 소규모기업을 적절하게 규율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제상의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주요 내용

- 이 연구는 UNCITRAL 사무국에서 준비한 조사자료와 분과 위원회에서의 5일간 열렸던 회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서설적인 고찰로서 그동안 국제기구에서 이루어 졌던 소규모기업관련 법제 개선 노력을 살펴보고, 그동안 UN 및 UNCITRAL 차원에서 소규모기업이 어떻게 다루어 져 왔는지의 연혁을 살펴본다.
- 이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쟁점은 크게 다음의 8가지이다. 즉 ① 입법가이드 도입과 모델법 도입 중 어떠한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포함한 입법형태의 문제, ② 소규모기업의 범위, ③ 사업등록 및 회사설립 간이화의 방식, ④ 최저자본요건, ⑤ 법인격 및 유한책임, ⑥ 소규모기업에 특유한 분쟁해결 수단, ⑦ 정보공유와 소규모기업 법제를 남용 방지 문제, ⑧ 내부 지배구조와 신인의무 등이 그것이다.
- 다만 UNCITRAL의 논의는 시작단계에 불과하고, 아직 각 쟁점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도출되지는 않았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이 글의 결론에서는 소규모기업의 특성과 이를 반영한 규제의 기본 방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본 원칙으로서 (a) 소규모기업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 가능할 것, (b)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보장하되 그 한계를 명확히 할 것, (c) 대외적 관계에 대하여는 유한책임원칙을 적용하되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예외를 설정할

것 등이 있다. 향후 우리 법제에 UNCITRAL에서 새로 고안한 조직이 수용되는 경우, 기존 조직과의 중복을 고려하여 미세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기능적으로 유사한 기업조직을 복잡하게 나열한다면 오히려 기업가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III. 기대효과

- 이 연구는 UNCITRAL의 논의 내용 및 입법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정리하고 있는바, 이를 통하여 UNCITRAL의 규범형성 과정 및 관심사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이 향후 UNCITRAL 회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UNCITRAL 차원의 입법시 한국의 상황 및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돋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국내의 입법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국제회의 및 워크샵에서 나타나는 비교법적 시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법률전문가들이 국제적 추세를 파악하고, 향후 우리 법제에도 이러한 논의를 반영한 변화 및 수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 위원회, 영세기업, 유한책임, 법인격, 사업등록

Abstract

I . Background and objectives

-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MSMEs”) account for major part in any country’s economy in terms of GDP, employment, etc. Especially the economic growth of a developing country is deeply dependent upon MSMEs.
- In spite of their importance, the performance of MSMEs is reportedly faced with economic, regulatory and financial barriers. The UNCITRAL launched new WG on MSMEs to provide brand-new legal system to support MSMEs in their life cycle, i.e. from their establishment, operation to wind-up.
- This research aims to analyse the issues raised in the WGI on MSMEs. Like other countries, the role and importance of MSMEs have been noted and legal system for boosting entrepreneurial sprit as well as direct financial support has been discussed in Korea. The discussion in the UNCITRAL would give Korean government some insights to better regulation on MSMEs.

II. Main Contents

- This research focuses upon the materials prepared by the secretariat and 5-day conference of the WGI. It starts with reviewing the efforts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es to develop legislation covering MSMEs and the history of MSME legislative initiatives by the UN and the UNCITRAL.
- The main topics in the WGI conference covered various issues including: ① the methods of legislation including whether to introduce legislative guide or model law; ② the scope of MSMEs; ③ the method of simplified registration and incorporation; ④ minimum legal capital requirement; ⑤ legal personality and limited liability, ⑥ tailor-made dispute resolution for MSMEs; ⑦ information sharing and prohibition against the abuse of simplified enterprise form; and ⑧ internal governance and fiduciary duty.
- Because the WGI was just launched, the issues mentioned above are still under review, without reaching solid consensus. For this reason this research rather tried to identify the features of MSMEs and suggested the fundamental principles required for further legislation concerning MSMEs as follow: (a) it should be easily accessible and readily available; (b) it should guarantee the autonomy by the members in operating MSMEs, subject to several mandatory norms; and (c) it should provide

limited liability toward the eligible members of MSMEs with some exceptions including the abuse of corporate form. Further, the research conclud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may need to harmonize the possible new enterprise form suggested by the UNCITRAL with current corporate forms whose functions seem to be already overlapped.

III. Expected Effect

- This research, by providing detailed information on the current legislative initiative and process, will help to better understand the process for legislation in the UNCITRAL and its main concern.
- Based upon the analysis, the Korea delegates may be more actively involved in following sessions and insert the provisions necessary for Korea into the legislative guide or model law of the UNCITRAL.
- This research will als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omestic legislation. From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workshop and conference, this research will help legal professionals to be updated with current trend in MSMEs regulations and to bring in positive change or revision to our legal system.

 Key Words : UNCITRAL, Micro business, Limited Liability, Legal Personality, Business Registration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5
제 1 절 소규모기업의 중요성	15
제 2 절 소규모기업의 사업 영위시 제도적 난점	19
제 3 절 논의의 방향	21
제 2 장 소규모기업에 관한 국제적 입법례	23
제 1 절 개 관	23
제 2 절 EU	23
제 3 절 OHADA	24
제 4 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25
제 5 절 그밖의 사례들	26
제 6 절 소결론	28
제 3 장 UNCITRAL에서의 논의 연혁	29
제 1 절 UNCITRAL 전체회의 및 콜로퀴엄	29
1. 2009년 제42차 회기, 2010년 제43차 회기	29
2. 2011년 제44차 회기, 2012년 제45차 회기	30
3. 2013년 제46차 회기	31

제 2 절 기존 유엔 활동과의 관련성	32
제 4 장 사무국 사전 조사자료의 주요내용	35
제 1 절 개 관	35
제 2 절 국제기구에 의한 소규모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례	36
제 3 절 단순화된 기업조직 도입의 결과 분석	39
제 4 절 소결론	42
제 5 장 분과위원회(WG1)에서의 논의 및 검토	45
제 1 절 개 관	45
제 2 절 입법작업의 형식적 측면의 쟁점	46
1. 입법형태	47
2. 단수의 조직형태만을 입법화할 것이지 여부	48
제 3 절 논의 범위의 확정	50
제 4 절 사업등록	51
1. 사업등록과 기업활동의 공식화	51
2. 사업등록 간이화의 방식	52
3. 추가 검토 대상	54
제 5 절 최저자본요건	55
1. 견해의 대립	55
2. 검 토	57
제 6 절 유한책임과 법인격	58
1. 유한책임	58
2. 법인격	59

3. 검 토	60
제 7 절 분쟁해결	61
1. 분쟁유형별 쟁점	61
2. 전문가에 의한 조정 및 전문법원 설치	64
제 8 절 소규모기업 법제 남용의 방지와 관련정보 공유	65
1. 기업조직형태의 남용우려 및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	65
2. 검 토	67
제 9 절 내부 지배구조와 신인의무	68
1. 내부 지배구조(Internal Governance)	68
2. 신인의무(Fiduciary Duty)	70
제10절 소결론 : 향후 전망	71
제 6 장 소규모기업 법제의 방향과 시사점	73
제 1 절 논의의 방향	73
제 2 절 소규모기업의 특수성과 규제의 방향	74
1. 소규모기업의 특수성	74
2. 법제의 기본 방향	75
제 3 절 소규모기업의 조직유형	77
참 고 문 헌	8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소규모기업의 중요성

근래 세계 경제의 흐름은 전통적인 대량생산 체제를 벗어나 다양한 아이디어에 기초한 새로운 상품의 발굴이 성공적인 기업경영의 중요 요소가 되었다. 이에 경제의 풀뿌리를 이룬다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소규모기업(MSME,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이를 원어 그대로 번역하자면 “영세, 소, 중기업”이라고 풀어야 하겠지만, 용어의 간이성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소규모기업”으로 표현하기로 한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소규모기업이 경제전반의 활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최근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일 뿐, 어느 나라의 경제에서나 소규모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먼저 세계 경제의 전반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GPFI(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의¹⁾ 통계에 따르면 소규모기업이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4억 2천만명 내지 5억 1천만명으로 추산되고, 그 중 3억 6천만명 내지 4억 4천만명은 신흥개발국(emerging market)에서 일하고 있다.²⁾ 다만 그 중 정식으로 사업등록을 한 소규모기업을 기준으로 하면 그 숫자는 3천 6백만명 내지 4천 4백만명, 즉 전 세계 소규모기업 중 약 9%에 그치게 된다(신흥개발국의 경우 이 숫자는 2천 5백만명 내지 3천만명임).³⁾ 한편 소규모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1) 2010. 12. 10. 서울에서 개최된 G20회의에서 논의된 “Financial Inclusion Action Plan”을 실행하기 위한 기구이다. 상세한 내용은 www.gpfi.org 참조.

2) 다만 이하의 통계에서 소규모기업에 대한 정의가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적인 비교시 오차가 있을 수는 있다. 이곳에 나오는 통계들은 기본적으로 A/CN.9/WG.I/WP.81, Selected activities of international and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promote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4 December 2013) (이하 “A/CN.9/WG.I/WP.81”로 표시한다), p.4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각 사이트의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3) GPFI, IFC, Small and medium enterprise finance: new findings, trends and G-20

제 1 장 서 론

비중은, 선진국(developed country)의 경우 72%이고 저소득 국가(low-income country)의 경우 47% 정도로 평가된다. 국내총생산에서의 비중은 선진국의 경우 64% 수준이고, 저소득 국가는 63% 정도이다.⁴⁾

각 지역별 경제에 있어서도 소규모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① EU의 경우 사업 중 소규모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9%로 평가받고 있다. 민간부분 일자리 중 2/3를 제공하고 있으며, EU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절반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이한 점으로서 EU의 경우 영세기업(micro enterprise)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즉 소규모기업 중 90%는 영세기업(즉 9명 이내의 직원을 고용)이고, 평균적으로 2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⁵⁾ ②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경우에도 소규모기업이 비중이 99%로 평가되는바, 국내총생산 중 30% 내지 60%를 생산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⁶⁾ ③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지역에서도 소규모기업은 경제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고용의 60%를 창출한다.⁷⁾ ④ 캐리비안 공동체 및 공동시장 (CARICOM,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에서도 소규모기업은 국내총생산의 50%, 고용의 70%를 각기 담당하고 있다.⁸⁾ ⑤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1,850만개를 웃도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 progress, 2013, page 12, available at www.ifc.org/wps/wcm/connect/16bca60040fa5161b6e3ff25d54dfab3/SME+Finance+report+8_29.pdf?MOD=AJPERES.

4) A/CN.9/WG.I/WP.81, p.4.

5) A/CN.9/WG.I/WP.81, p.4.

6) P. Manawanitkul, Enabling Environment for Microbusiness – ASEAN Experience, Presentation delivered at the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Enabling Environment for Microbusiness and Creative Economy, organized by UNCITRAL, the Ministry of Justice Republic of Korea and the Korean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Seoul, 14-15 October 2013.

7) www.apec.org/Groups/SOM-Steering-Committee-on-Economic-and-Technical-Cooperation/Working-Groups/Small-and-Medium-Enterprises.aspx

8) www.oas.org/en/media_center/press_release.asp?sCodigo=E-061/12

는 수준의 소규모기업이 있으며 이들 소규모기업은 국내총생산의 50%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⁹⁾ ⑥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의 경우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African Development Bank)에 따르면 소규모기업은 고용 중 45%, 국내총생산의 33%를 각기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¹⁰⁾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아래의 표들은 우리나라에서 소규모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준다(이하의 표들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정의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료분석한 것이다).

[표 1: 연도별 중소기업 추이(한국)]¹¹⁾

(단위: 개, 명,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사업 체수	전 체	3,069,400	3,125,457	3,234,687
	중소기업	3,066,484	3,122,332	3,231,634
	비 중	(99.9)	(99.9)	(99.9)
종사 자수	전 체	13,398,497	14,135,234	14,534,230
	중소기업	11,751,022	12,262,535	12,626,746
	비 중	(87.7)	(86.8)	(86.9)

9) <http://www.informeavina2008.org/english/index.shtml>.10) www.afdb.org/en/ 참조.1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연차보고서(2013) (available at <http://www.smba.go.kr>), 3면.

[표 2: 제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제발전 기여율(한국)]¹²⁾

(단위 : %)

구 분		1960년대 (63~69)	1970년대 (70~79)	1980년대 (80~89)	1990년대 (90~99)	2000년대 이후 (00~11)	전체 (63~11)	
사업 체수	기 여 율	중소기업	94.0	94.8	99.4	102.2	100.6	99.6
		대 기 업	6.0	5.2	0.6	△2.2	△0.6	0.4
종사 자수	기 여 율	중소기업	38.1	47.1	81.9	△6.8	95.4	78.2
		대 기 업	61.9	52.9	18.1	△93.2	4.6	21.8
생산 액	기 여 율	중소기업	26.5	32.2	45.7	50.3	45.8	46.4
		대 기 업	73.5	67.8	54.3	49.7	54.2	53.6
부가 가치	기 여 율	중소기업	25.7	35.7	47.7	50.5	45.1	47.3
		대 기 업	74.3	64.3	52.3	49.5	54.9	52.7

주 : 1. 종사자수 5인 이상 기준

2. 기여율은 전체 증강분에 대한 중소기업(또는 대기업) 증강분의 백분
비(%)임

위 표 1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고용측면에서는 86-87%, 개수로는 99% 이상의 매우 높은 비중을 보여준다. 표 2는 특히 고용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경제전반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는 소규모기업에 의한 경제활동의 활성화가 긴요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12) 중소기업청, 위 보고서, 7면.

제 2 절 소규모기업의 사업 영위시 제도적 난점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를 영업활동으로 연결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대기업으로 시작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실제 창업하고 규모를 키워 나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 대기업과 달리 인적, 물적 역량이 제한되고 사업의 실패 위험성이 높아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다. 이하에서는 소규모기업이 직면하는 주요한 난제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는 규제상 또는 행정상 장벽이다. 낮은 품질의 입법활동(poor quality law-making), 과도한 서류작업(excessive paperwork), 비효율적이고 지연된 결정(inefficient and delayed decisions), 행정서비스에의 접근 불능(inaccessibility of services), 관료주의적인 개입(bureaucratic obstruction), 권한남용(abuse of authority) 등이 그 사례이다.¹³⁾ 이러한 장벽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서는 관료들의 자질 부족, 과도한 중앙집권, 부패, 민간부분에 대한 신뢰부족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특히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의 경우 36% 이상의 소규모기업이 과도한 규제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⁴⁾ 대기업과 달리 소규모기업은 복잡한 행정법규 내지 규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도 번잡한 각종 등록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¹⁵⁾ 이러한 규제 또는 행정상 장벽의 문제점은, 이들 장벽은 각기

13) A/CN.9/WG.I/WP.81, p.15.

14) Financial Inclusion Experts Group/SME Finance Sub-group, Scaling-up SME access to financial services in the developing world, IFC (2010) (available at <http://www.ifc.org/wps/wcm/connect/bd1b060049585ef29e5abf19583b6d16/ScalingUp.pdf?MOD=AJPERES>), p.15.

15) ILO, The Promotion of Sustainable Enterprises,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96th

누적적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어서 결국 전체 경영환경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IFC의 분석에 따르면 적은 부담으로 사업등록 및 재산등록을 할 수 있는 국가에서 제조업분야의 소규모기업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⁶⁾ 규제 또는 행정상 장벽을 타개하기 위하여는 우선 각 규제의 목적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¹⁷⁾ 예컨대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의 의미를 가져야 하고, 정부가 이를 통하여 사업규제 및 수익창출을 의도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는 이렇듯 규제 및 행정상 장벽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DFID, IFC 및 EU는 방글라데시에서 소규모기업에 관한 복수의 규제를 표준화, 단순화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프로젝트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¹⁸⁾

둘째가 각종 조세 및 준조세에 의한 부담이다. 소규모기업의 경우 수익이 창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충분한 현금흐름을 확보하지 못하여 조세 등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세제는 통상 복잡한 산식과 요건에 의해 계산되므로 최초 기장시부터 이를 감안하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세계은행이 포함된 연구그룹의 검토에 따르면, 복잡한 세제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세금 납부제도 등이 소규모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규모기업의 법준수 의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¹⁹⁾ 복잡한 세제는 다양한 행정목적이 무

SessionReportVI(2007) (available at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documents/publication/wcms_093969.pdf), p.90.

16) Financial Inclusion Experts Group/SME Finance Sub-group, 앞의 글, p.15.

17) A/CN.9/WG.I/WP.81, p.15.

18) <http://archive.thedailystar.net/newDesign/news-details.php?nid=224296> 참조. 그밖에 IFC 와 USAID도 벨라루쉬에서 규제개선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바 있다. www.usaid.gov/where-we-work/europe-and-eurasia/belarus/private-sector-developmentand-Entrepreneurship 참조.

19) R. Stern, J. Loeprick, FIAS Tax Team and World Bank Group, Small Business Taxation: Is this the Key to Formalization? Evidence from Africa and Possible Solutions (2007) (available at <http://www.businessenvironment.org/dyn/be/docs/159/Coolidge.pdf>), p.2.

분별하게 포함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소규모기업이 공식화(formalize)하지 못한 원인 중의 하나는 조세 및 준조세라고 할 수 있다.²⁰⁾

셋째가 재정적인 어려움이다. 대외 실적이 미미하고 재무적으로 취약한 소규모기업의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개발도상국에 관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소규모기업 중 18% 정도만이 공적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¹⁾

제 3 절 논의의 방향

이 글은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 위원회(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이하 “UNCITRAL”)에서의 소규모기업에 관한 법제화 논의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소규모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성공적인 소규모기업 창업 및 운영에는 여전히 제도적 난점이 많다. UNCITRAL에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하 이 글에서 다룰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규모기업에 관한 국제적인 입법례를 살펴본다(제2장). UNCITRAL WGI (Working Group I. 이하 “분과위원회”라고 하면 이를 가리킨다)가 소규모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결과물로 산출하고자 하는 것은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이다.

20) R. Adlung and M. Soprana, World Trade Organization, SMEs in Services Trade – A GATS Perspective, Staff Working Paper ERSD-2012-09, WTO Economic Research and Statistics Division (2012) (available at http://www.wto.org/english/res_e/reser_e/ersd201209_e.pdf), p.14.

21) K. Kushnir, M. L. Mirmulstein and R. Ramalho,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ound the world: How many are there, and what affects their count?, MSME Country Indicator, World Bank/IFC (2010) (available at <http://www.ifc.org/wps/wcm/connect/9ae1dd80495860d6a482b519583b6d16/MSME-CI-AnalysisNote.pdf?MOD=AJPERES>).

제 1 장 서 론

따라서 기존 국제적인 입법노력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어떠한 결실을 맺었는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UNCITRAL에서의 논의 연혁에 관하여 살펴본다(제3장). 2014년 초 소규모기업 법제가 본격으로 다루어지기 이전에 각종 위원회 및 콜로퀴엄에서 어떤 쟁점이 어떠한 방향으로 다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사무국 사전 조사자료의 주요내용을 검토한다(제4장). 이는 UNCITRAL WGI 회의를 위하여 사무국이 준비한 내용으로서 각 쟁점에 관한 상세한 분석을 담고 있다. 그 중 실제 분과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지 않은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은 분과위원회에서의 논의 및 검토이다(제5장). 한국의 비롯하여 각국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5일간 열띤 논의를 벌였는바, 그 회의에서 도출된 쟁점과 결론을 분석하여 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갈음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소규모기업에 관한 법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앞서의 논의가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를 검토한다(제6장).

제 2 장 소규모기업에 관한 국제적 입법례

제 1 절 개 관

소규모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많은 국가들은 제도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 개별 국가들은 법제개선을 통하여 주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²⁾

이러한 노력을 국제적으로 함께 추구할 필요성은 없는 것일까? 소규모기업은 그 본질상 사업범위가 좁고 내수에 치중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한다면, 국제적 입법의 틀을 만들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통신, 배송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영업장소가 한 나라에 제한되지 않게 된 상거래 현실을 고려할 때, 국제적 규범의 통일화는 소규모기업 운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대기업은 각 나라 별로 특유한 제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반면,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기업은 이러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 나아가 소규모기업 규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 과정에서 각국은 상호 법제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보다 나은 법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다양한 지역에서 소규모기업을 위한 통일적 입법 노력이 이루어진바 있다. 아래와 같이 항목을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 2 절 EU

EU는 공동체 차원에서 적용되는 소규모기업 법제를 만들기 위해 일찍부터 노력해왔다. 통상 EU에서 소규모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①

22) A/CN.9/800 Report of Working Group I (MSMEs) on the work of its twenty-second session (New-York, 10-14 February 2014) (이하 “A/CN.9/800”라고 표시함), p.5.

250명 이내의 직원을 갖고 있으며, ② 연간매출이 5,000만 유로를 넘지 않거나, 자산이 4,300만 유로를 넘지 않아야 한다.

2008년에 EU가 도입한 “Small Business Act”는 회원국들을 위한 포괄적인 소규모기업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10개의 원칙이 포함되는데, 기본적으로 EU 차원에서 소규모기업을 위한 공평한 환경을 제공하고, 소규모기업에 관한 행정적, 법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겨있다.²³⁾ Small Business Act의 시행을 모니터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직, 즉 SME Performance Review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인 2011년 EU 위원회(EU Commission)는 향후 도입될 EU 입법에 있어서 영세기업(micro enterprises)의 경우에는 입법에 따른 부담을 감면해 주는 별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천명한바 있다. 또한 소규모기업의 의견을 향후 입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²⁴⁾

2013년 중반에 EU위원회는 1인 회사(single member liability company)에 관해 각국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은바 있다.²⁵⁾ 각국의 1인 회사 법제를 통일하는 것이 특히 소규모기업에게 비용경감 등 이익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역시 소규모기업회사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1인 회사에 관한 규제완화 관점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제 3 절 OHADA

OHADA란 아프리카 상법조정위원회(Organisation pour l'Harmonisation en Afrique du Droit des Affaires)를 뜻하며 각종 국제조직 중 거의 유일하게 소규모기업에 관한 통일적 입법 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010년 OHADA는 통일상법(Acte uniforme sur le droit commercial

23) <http://ec.europa.eu/enterprise/policies/sme/small-business-act>에서 다운로드 가능.

24)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1-1386_en.htm?locale=en.

25)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consultations/2013/single-member-private-companies

general)을 개정하면서 기업가(entrepreneur)에 의하여 운영되는 소규모 상업활동에 적용되는 단순화된 조직형태에 관한 편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별 기업가에 의한 기업조직은 상업 및 신용등록청 (Registre du commerce et du crédit mobilier)에 간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각종 절차상 특례가 포함되어 있는) 위 법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영세기업인 경우 기업의 회계조직 및 조정을 위한 통일법(*Acte uniforme portant organisation et harmonisation des comptabilités des enterprises*) 제13조에 추가적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²⁶⁾

나아가 2010년에 OHADA는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통일법(*Acte uniforme relative au droit des sociétés cooperatives*)을 도입하였는바, 여기에도 단순한 형태의 협동조합기업(sociétés cooperatives simplifiées)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²⁷⁾

마지막으로 OHADA는 사업회사 및 경제유관그룹에 관한 통일법(*Acte uniforme relatif au droit des Sociétés Commerciales et du Groupement d'Intérêt Economique*)을 개정하고 있는바, 여러 회사조직 형태의 설립 및 운영시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즉 최저자본요건, 공증인, 새로운 조직형태의 창설 등에 관한 기준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²⁸⁾

제 4 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한국, 중국 등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를 이웃하고 있는 동남아시아국가 등도 지역공동체를 통하여 소규모기업을 위한 제도 정비에

26) A/CN.9/WG.I/WP.81, pp.6-7.

27) A/CN.9/WG.I/WP.81, pp.6-7.

28) World Bank & IFC, Doing Business dans les États membres de l'OHADA (2012), (available at <http://www.doingbusiness.org/~media/FPDKM/Doing%20Business/Documents/Subnational-Reports/DB12-OHADA-French.pdf>), p.3.

나서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의 경우 2004년에 소규모기업 발전을 위한 10년의 청사진(Policy Blueprint for SME Development 2004-2014)을 제시한바 있다. 여기에는 소규모기업 등록절차의 단순화를 위한 과제와 정책 및 규제구조 조정을 위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²⁹⁾ 위 청사진에 기초하여 5년간의 전략적 행동계획(Strategic Action Plan 2010-2015)³⁰⁾이 공포되었는바, 이에 따르면 모범실무관행의 전파(예컨대 구성원 국가 전체의 소규모기업 포탈 형성), 데이터베이스에의 접근활성화 등이 장려되고 있다.³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도 유사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09년 논의되기 시작한 “Ease of Doing Business” 안건은 2015년까지 각 분야에서 기업하기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 중 한 분야가 “창업” 영역이다. 구체적으로 창업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의 수, 창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 및 시간, 자본납입요건 등이 면밀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세미나, 워크샵이 개최된바 있고, 창업희망자에 대하여는 맞춤형 조언이 제공되고 있다.

제 5 절 그밖의 사례들

그밖에도 각 지역별로 소규모기업의 창업 및 경영활동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① 동남아프리카의 경우 COMESA(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라는 조직을 통하여 제도적 개선노력이 진행 중이다. COMESA는 2013년 8월 소규모기업 발전을 위한 지역정책 전략(Regional Policy Strategy for MSMEs Development)의 초안을 발표하였는바, 이 초안은 소규모기업의 기술발전 및 생산능력 확

29) A/CN.9/WG.I/WP.81, p.8.

30) A/CN.9/WG.I/WP.81, p.8.

대 등을 목표로 소규모기업을 위한 펀드를 창설하고, 정부조달재원 중 일정 비율을 소규모기업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COMESA는 또한 동남아프리카에서 소규모기업이 무역을 행할 때에 적용될 단순한 절차를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Simplified Trade Regime).

- ② 남아프리카의 경우 별도의 SADC(Southern Africa Development Community)라는 국제적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SADC가 발표한 재정 및 투자 프로토콜(Protocol on Finance and Investment)은 경제협력에 있어서 소규모기업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소규모기업이 정규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하여 소규모기업을 위한 포털을 만들고, 일련의 바이어-셀러 모임을 조직하여 소규모기업과 대기업간의 연결고리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³¹⁾
- ③ 아랍권 국가들의 경우 2009년 1월 쿠웨이트에서 개최된 제1회 아랍 경제사회개발 정상회의(Arab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Summit)의 결과 만들어진 특별계정을 통해 소규모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중심이 된다. 위 특별계정은 별도의 펀드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일단계로 자금중개기관에 배분된 자금을 자금중개기관이 개별 소규모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에 의한다.
2013. 4. 현재 아랍권의 16개국이 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³²⁾

31) A/CN.9/WG.I/WP.81, p.9.

32) A/CN.9/WG.I/WP.81, p.9.

제 6 절 소결론

위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것은 소규모기업을 둘러싼 국제적 노력은 주로 기술적, 재정적인 원조 내지 지원에 그친 경우가 많고, 소규모기업의 필요성을 반영한 포괄적인 입법작업은 흔치 않다는 점이다. 제도적인 틀을 바꾸는 포괄적 작업은 OHADA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위 OHADA의 노력도 기존의 규제적, 경제적, 행정적 장벽을 낫추는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새롭고 혁신적인 입법 모델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³³⁾

소규모기업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은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선진국도 마찬가지이다.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국제적인 상거래에 대기업 만이 종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포괄적인 국제규범을 창설할 필요성은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수요, 공급간의 부조화를 고려할 때, 이제 개별국가, 지역적 논의를 벗어나 범세계적 차원에서 소규모기업 법제를 검토할 필요가 절실해졌다고 하겠다. UNCITRAL에서 소규모기업 법제를 검토하게 된 것도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

33) A/CN.9/800, p.4.

제 3 장 UNCITRAL에서의 논의 연혁

제 1 절 UNCITRAL 전체회의 및 콜로퀴엄

1. 2009년 제42차 회기, 2010년 제43차 회기

UNCITRAL 차원에서 소규모기업 법제가 최초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이다. 2009년에 개최된 제42차 전체회의는 특히 영세기업의 발전을 국제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사무국에게 영세기업 금융(micro finance)에 관한 법적, 규제적 이슈를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³⁴⁾ 영세기업 금융을 위해 요청되는 법적인 토대에 관하여 제언을 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입법자 및 정책입안자들이 참조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다.

2010년의 제43차 전체회의에서는 위 사무국이 작성한 보고서가 논의되었다.³⁵⁾ 위 위원회에서는 빈곤 제거와 새천년의 발전목표 달성이 라는 측면을 고려하면서, 통상적인 재원조달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는 영세기업의 재원 조달 문제가 검토되었다. 위원회는 위 쟁점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모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 등을 초빙하는 콜로퀴엄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34) A/64/17 -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forty-second session(New York, 29 June - 17 July 2009), paras. 432-433.

35) A/CN.9/698 - Microfinance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이 보고서의 내용에 관하여는 오수근, Micro Finance / Micro Business에 관한 UNCITRAL에서의 논의 분석, 글로벌 법제전략 연구 13-32-⑧-8, 법제연구원(2013), 16-31면 참조.

2. 2011년 제44차 회기, 2012년 제45차 회기

2010년 전체회의의 논의 결과에 따라 2011년 1월에 제1차 콜로퀴엄이 개최되었다.³⁶⁾ 콜로퀴엄에서의 열띤 논의 과정에서, 몇몇 나라들에서의 성공적인 사례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모범실무(best practice)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많은 나라들이 적절한 규제 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³⁷⁾

2011년 개최된 제44차 전체회의에서는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의하였다: (i) 과잉담보(over-collateralization)와 경제적 가치가 없는 목적물의 담보제공, (ii) 이른바 e-money에 관한 이슈(저축예금으로서의 법적 성격, e-money의 발행자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것인가, 어떤 규제를 받아야 하는가 등), (iii) 영세기업 금융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신속하며, 저렴한 절차의 마련 문제, (iv) 소규모 기업에 대한 담보대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³⁸⁾

2012년에 개최된 제45차 전체회의에서는 위 네 가지 쟁점에 관하여 사무국이 준비한 자료를³⁹⁾ 검토하였다. 위 자료는 소액금융의 담보대출, 분쟁해결방안의 메커니즘, 전자화폐 등에 관한 것이었다.⁴⁰⁾ 전체회의에서의 논의 결과 다음 각 주제들에 관한 별도의 2차 콜로퀴엄을 개최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하였다: (i) 간이한 기업설립과 사업등록의

36) 발표내용에 관하여는 아래 사이트 참조.

<http://www.UNCITRAL.org/UNCITRAL/en/commission/colloquia/microfinance-2011.html>;

<http://www.UNCITRAL.org/UNCITRAL/en/commission/colloquia/microfinance-2011-papers.html>

37) A/CN.9/727 - Legal and regulatory issues surrounding microfinance (2011)

38) A/66/17 -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forty-fourth session (New York, 27 June - 8 July 2011), paras. 241-246.

39) A/CN.9/756 - Selected legal issues impacting microfinance

40) 그 상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오수근, 앞의 글, 54-70면 참조.

활성화 방안, (ii) 소규모기업들의 신용거래 접근성, (iii) 소액금융 거래에 관한 분쟁해결 방안, (iv) 소규모기업들을 위한 법률환경 조성을 위한 그밖의 과제.⁴¹⁾

3. 2013년 제46차 회기

2013. 1. 비엔나에서 열린 제2차 콜로퀴엄에는 정부, 국제기구, NGO, 민간영역 및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주로 영세기업 금융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i) 소규모기업을 위한 환경 조성과 법의 지배, (ii) 영세대출자의 설립 및 등록, (iii) 소규모기업을 위한 대체적인 분쟁해결 시스템, (iv) 모바일 지분수단에 관한 법적 환경의 조성, (v) 소규모기업의 신용거래에 관한 법적 이슈, (vi) 소규모기업의 도산절차에 관한 법적 쟁점.⁴²⁾ 위 콜로퀴엄의 논의과정에서 영세기업 뿐 아니라 소기업, 중기업을 포함한 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과 이를 위하여 별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⁴³⁾

이러한 배경 하에 2013년 개최된 제46차 전체 회의에서는 소규모기업을 위하여 우호적인 법적 환경을 조성하려면 별도의 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특히 콜롬비아 정부는 간이한 사업등록으로 인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던 자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소규모기업을 다루는 별도의 분과위원회가 신설된다면 국제적인 견지에서 소규모기업에 우호적인 기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전체회의는 소규모기업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만들

41) A/67/17 -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forty-fifth session (New York, 25 June - 6 July, 2012), paras 124-126.

42) 구체적인 발표자료는 아래 주소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http://www.UNCITRAL.org/UNCITRAL/en/commission/colloquia/microfinance-2013-papers.html>.

43) A/CN.9/780 - Microfinance: creating an enabling legal environment for micro- busines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2013).

고, 이를 통해 소규모기업들이 설립 및 청산의 전 과정을 통하여 당면하게 되는 법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먼저 검토하기로 한 주제는 “회사설립 및 등록의 단순화 (simplification of business incorporation and registration)”이다. 먼저 위 주제를 검토한 다음 이를 기초로 (i) 소규모기업간 자금대출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시스템의 개선, (ii) 금융서비스에의 접근문턱을 낮추는 방식(기존의 e-commerce 활용, 모바일 결제시스템 등 포함), (iii) 신용공여에 대한 가이드라인(대출에 있어서의 투명성 보장, 집행가능성 부여), (iv) 소규모기업을 위한 신속, 간이한 도산절차 등으로 확대할 여지도 검토하기로 하였다.⁴⁴⁾⁴⁵⁾ 향후 분과위원회가 진행할 작업의 형식에 관하여, 전체회의는 가급적 탄력적인 방식 즉 입법지침이나 모델법을 각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⁴⁶⁾

제 2 절 기존 유엔 활동과의 관련성

일찍이 유엔 차원에서도 소규모기업 활동의 중요성은 종종 부각된 바 있다. 일례로 유엔은 각종 협동조합(cooperative) 활동의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유엔 경제사회개발위원회(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는 협동조합이 경제발전과 빈곤추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협동조합은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격변동폭이 심한 농업분야 등에 있어서 경제를 안정화 시킬 수 있으며, 공평한 소득분배에도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충분히 생산할 수 없는 분야의 생산을 담당함으로써 사회적 수

44) 다만 (iv)와 관련하여서는 또다른 분과위원회(Working Group V)가 2013. 12. 16.부터 18.까지 개최한 콜로퀴움과 위 부과위원회의 제45차 회의(2014. 4. 20. - 4. 25.) 와 관련성이 있기는 함).

45) A/68/17 -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forty-sixth session (New York, 8 - 26 July 2013), paras. 316-322.

46) A/CN.9/WG.I/WP.80, Annotated provisional agenda (2 December 2013), p.4.

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인도의 경우 비공식 경제분야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인데, 여성자영업자 협동조합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사업기회 개발, 마케팅, 능력신장 등을 이룰 수 있도록 돋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비공식적 경제분야가 공식화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이다.⁴⁷⁾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유엔은 2012년을 국제 협동조합의 해 (International Year of Cooperatives)로 정한 바 있다. 또한 유엔 사무총장은 2013년에 유엔 총회에서 협동조합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입법 노력을 촉진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기도 하였다.⁴⁸⁾

소규모기업에 관한 법제 개선은 한편으로는 유엔이 제시하고 있는 향후 개발 어젠다, 즉 지속가능한 개발 및 포괄적 파이낸스(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clusive finance)와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① UN의 ⁴⁹⁾ 2012년 7월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에 관하여 결의한바 있다.⁵⁰⁾ 이는 지속가능성 성장 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위 지속가능성 성장회의는 1992년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렸던 유엔 환경 및 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20주년과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던 지속가능 발전 세계 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었는바, 2015년 이후의 개발 어젠다(Post-2015

47) S. Mshiu, The Cooperative Enterprise as a Practical Option for the Formalization of Informal Economy, ILO COOPAfrica (2010), (available at http://www.businessenvironment.org/dyn/be/docs/200/2.2.2_Cooperative_Practical_Option_Informal_Econ.pdf).

48) A/68/168 Cooperatives in social development and the observance of the International Year of Cooperatives (22 July 2013), para 80(a).

49) 이는 세칭 Rio+20 회의로 호칭된바 있다.

50) Resolution A/RES/66/288.

Development Agenda)에 관하여도 논의되었다.⁵¹⁾ 위 유엔총회 결의는 이후 UNCITRAL에도 반영되었되었는바, 앞서 본 2013년의 소규모금융에 관한 콜로퀴엄, 2013년 전체회의의 법에 의한 지배 강화는 위 유엔결의가 밑바탕이 된 것이라고 하겠다.⁵²⁾

- ② 또한 유엔총회는 2012년 “Entrepreneurship for development”에 관하여 결의한바 있다.⁵³⁾ 이는 지속가능성 성장을 위하여 기업활동의 중요성에 주목한 것으로서, 소규모기업을 포함한 기업가들에 넓은 활동영역을 보장하고 법적, 사회적, 규제적 장벽을 낮출 것을 제안하였다. 이 결의가 궁극적으로 의도한 것은 평등하고 효과적인 경제참여(equal and effective economic participation)였다.
- ③ 2015년 이후의 개발 어젠다를 실제 발전시키기 위한 후속작업으로서 2012년에 유명전문가의 고위패널(High 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이 구성되었다. 위 패널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위 개발 어젠다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조치들에 관하여 조언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이다.⁵⁴⁾ 위 패널은 2013. 5. 30. 사무총장에게 최종 보고서를⁵⁵⁾ 제출하였는바, 위 보고서도 소규모기업들이 특히 복잡한 규제에 취약하고,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51) www.uncsd2012.org/about 참조.

52) A/CN.9/800, p.4.

53) Resolution A/RES/67/202.

54) <http://www.post2015hlp.org/>

55) The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ing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2013, (available at www.un.org/sg/management/pdf/HLP_P2015_Report.pdf).

제 4 장 사무국 사전 조사자료의 주요내용

제 1 절 개 관

2014년 2월에 개최된 분과위원회에 앞서 사무국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였다. 위 자료는 2013년 UNCITRAL 제46차 전체 회의에서 소규모기업 법제를 다루기로 하면서 사무국에 요청했던 것들이었다. 사무국이 준비한 자료는 크게 세 가지였다. 즉 ① 소규모기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제적 또는 정부간 기구가 행해왔던 활동 등을 정리한 자료,⁵⁶⁾ ② 단순화된 기업설립 시스템의 사례 및 그 활용에 관한 통계적 자료,⁵⁷⁾ ③ 콜롬비아의 간이회사(simplified corporation)의 도입 및 운영현황에 관한 자료이다.⁵⁸⁾

위 자료들 중 상당 부분은 후술하는 분과위원회에서 실제로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한편 위 ③의 자료는 우리나라와 경제환경, 산업여건 등이 다른 특정 나라에 관한 것이어서 많은 시사점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①, ②의 자료 중 이후 분과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되지는 않았으나 전체 소규모기업 법제의 맥락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쟁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이하에서 검토할 것은 (i) 국제기구에 의한 소규모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례와 (ii) 단순화된 기업조직 도입의 실효성 사례분석이다. 전자는 주로 위 ① 문건에 기재되었고, 후자는 ②에 담겨 있다. (i)의 경우, 실제 2014년초 개최된 분과위원회의 주된 관심이 “법제도적 개선”인데 반해 “재정적 지원”에서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고, 따라

56) A/CN.9/WG.I/WP.81

57) A/CN.9/WG.I/WP.82,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Features of simplified business incorporation regimes (10 December 2013). (이하 “A/CN.9/WG.I/WP.82”로 표시한다)

58) A/CN.9/WG.I/WP.83, Observations by the Goverment of Columbia (2 December 2013).

서 (i)의 관점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분과위원회에서는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제 2 절 국제기구에 의한 소규모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례

앞서 언급하였듯이 소규모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딪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경제적 장벽, 즉 제대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 받거나 신용을 공여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적 차원에서의 공조노력이 이루어져왔다. 이하에서는 사무국에 의하여 조사된 다양한 국제적 기구의 재정지원제도 개선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GPFI(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⁵⁹⁾ 소규모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소규모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G20와 공조하여 “Peering Learning Program”을 운영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각국이 다른 나라에서 실시되는 성공적인 소규모기업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장점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후술하는 IFC와 함께 2012년 4월에 “SME Finance Forum”을 발족시켰다. 이 역시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서 GPFI 및 다른 기관들이 보유하는 주요한 문서에의 접근을 허용하면서 각국 정부 및 소규모기업들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나아가 2013년 4월에는 “Women’s Finance Hub”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SME Finance Initiative” 프로그램도 시작하였다. 전자는 여성기업인들의 네트워크를 창설하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협력적인 파이낸싱(collaborative financing)과 기업인들의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IFC이외에도 영국 정부

59) 기구의 구성 및 연혁 등에 관하여는 www.gpfi.org 참조.

등 다른 공적 기관들도 많이 관여하고 있다. 다만 GPFI의 이러한 활동들은 대체로 이미 설립된 소규모기업의 발전 및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설립 자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눈에 띄지 않는다.⁶⁰⁾

둘째로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역시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국제적 기구들과 힘을 합쳐서 소규모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⁶¹⁾ IFC가 많이 관여하고 있는 부분은 리스, 담보부신용공여, 신용평가 등의 분야이다.⁶²⁾ 특히 담보부신용공여와 관련하여 IFC는 UNCITRAL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담보관련 입법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⁶³⁾ IFC의 조언을 통하여 중국은 2007년 재정지원 제도를 개선하였고, 그 결과 2008년도에 70,000개가 넘는 소규모기업이 신용공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경우에도 2012년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결과 약 54,000개의 소규모기업이 필요한 자금을대출받았다. IFC는 그밖에 소규모기업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돋고 있기도 하다. 혁신적인 은행 모델, 소매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은 결국 소규모기업을 재정적인 측면에서 돋는 것이기도 하다.⁶⁴⁾

셋째로 AfDB(African Development Bank)⁶⁵⁾는 2006년과 2007년에 케냐 및 카메룬에서 여성기업인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및 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Growth Oriented Women Entrepreneurs” 프로그램을

60) A/CN.9/WG.I/WP.81, p.13.

61) 조직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www.ifc.org 참조.

62) IFC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factsheet, at www.ifc.org/wps/wcm/connect/967d26804b7eee0986a5c6bb578891b/IFC-SMEFactsheet2012.pdf?MOD=AJPERES

63)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2010) (available at http://www.UNCITRAL.org/pdf/english/texts/security-lge/09-82670_Ebook-Guide_09-04-10English.pdf).

64) 그밖에 IFC도 여성기업인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의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A/CN.9/WG.I/WP.81, p.14.

65) 조직의 구성 등에 대하여는 www.afdb.org 참조.

시작한바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한 은행은 USAID와 케냐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개별 여성기업인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이른바 “Grace Loan”을 도입하기도 하였다.⁶⁶⁾

넷째로 OECD는⁶⁷⁾ 소규모기업들의 재정적인 수요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아 각국의 소규모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하는 통계를 수집하고 있다(이른바 ‘scoreboard’). 이같은 정보를 수집하여 공개하는 목적은 금융가, 정부 및 소규모기업들 사이에 위 정보가 유통될 수 있게 함으로써, 소규모기업의 신용공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규제당국의 시스템 개선 노력을 진작시키고 하는데 있다.⁶⁸⁾

다섯째로 UNCDF(United Nations Capital Development Fund)는⁶⁹⁾ 소규모기업이 낮은 비용으로 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예컨대 “Youth Start”라는 프로그램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의 청년들 200,000명을 대상으로 금융/비금융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Clean Start”라는 프로그램은 빈곤한 가정 및 영세기업가들에 대하여 염가의 청정에너지에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⁷⁰⁾

마지막으로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는⁷¹⁾ 이른바 “Small Investment Program(SIP)”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소규모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소액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MIGA는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정치적 불안정성에 관한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위 금융기관들이 (각 지역의 중소금융기관을 통하여) 소규모기업들에게 자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한다.⁷²⁾ 이같은 SIP 프로

66) A/CN.9/WG.I/WP.81, p.14.

67) 구성 등에 관하여는 www.oecd.org 참조.

68) A/CN.9/WG.I/WP.81, p.14.

69) 구성 등에 관하여는 www.uncdf.org 참조.

70) A/CN.9/WG.I/WP.81, p.15.

71) 구성 등에 관하여는 www.miga.org 참조.

72) MIGA, Small Investment Program (available at www.miga.org/documents/SIP.pdf)

그램을 통하여 정정이 불안한 국가의 소규모기업들도 큰 문제 없이 외부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⁷³⁾

제 3 절 단순화된 기업조직 도입의 결과 분석

단순화된 기업조직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과연 새로운 기업조직에 대한 수요는 많을 것인가? 위 질문에 ‘직관적으로’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다. 기존 각국의 경험으로부터 단순화된 기업조직 도입에 따른 성과를 추출하는 것은 어찌 보면 소규모기업 법제 개선 관련 분과위원회의 향후 작업을 위해 필연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문제라 하겠다. 도대체 새로운 기업조직 또는 간편한 설립절차와 소규모기업의 발전, 성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추가적 제도개선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Joseph A. McCahery, Erik P. M. Vermeulen와 Priyanka Priydershini는 2013. 1. 16.부터 3일간 개최되었던 제2차 콜로퀴움에서 단순화된 기업조직 도입의 실효성을 분석결과를 발표하였고,⁷⁴⁾ 그 내용은 UNCITRAL 제1분과위원회 사무국에 수용되어 “A/CN.9/WG.I/WP.82” 보고서에 담기기에 이르렀다. McCahery등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인디아, 뉴질란드, 싱가폴, 아랍에미리트, 콜롬비아 등 각국에서 운영 중인 16개의 회사 형태이다.⁷⁵⁾ 이하 위 McCahery 등의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을

73) A/CN.9/WG.I/WP.81, p.15.

74) Joseph A. McCahery, Erik P. M. Vermeulen and Priyanka Priydershini, “A Primer on the Uncorporation”,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 Law Working Paper No. 198/2013 (March 2013) (available at http://ssrn.com/abstract_id=2200783) 참조.

75) 구체적으로 검토의 대상이 된 것은 다음과 같다. French Société par actions simplifiée, as modified by Law No. 2008-776, La Loi de modernisation de l'économie, 4 August 2008 (“France SAS”); the German GmbH German Limited Liability Act (“GmbH/UG”); the German Handelsgesetzbuch (HGB) Commercial Code (“GmbH & Co./KG”); the Indian Companies Act, 2013 - Private and Public Limited Companies (“India LLC”); the Indian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ct, 2008 (“India LLP”); the

몇 가지로 나누어 소개한다.

첫 번째로 단순화된 기업형태의 성공요소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형태의 장점과 조합기업의 장점을 결합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i) 투자자들의 유한책임 및 기업의 내부조직 및 운영에 관한 최대한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ii) 운영의 문서화 및 형식성에 있어서 부담을 최대한 감경하며, (iii) 설립과정에서의 형식성과 자본유지의 요건을 크게 감경하는 등 조합적 요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반면 (iv) 기존 회사 형태에서처럼 구성원들에게 거의 완전한 유한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립의 관점에서 볼 때 신속한 설립절차를 낮은 가격에 마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대기업에도 중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특히 소규모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출자 형태도 유무형의 자산으로 자유롭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많은 나라에서 노무출자도 허용하고 있다.⁷⁶⁾ 법률에서 단순화된 기업형태에 관하여 기본조항(default rule)을 둘 필요도 있다. 기본조항을 두게 되면 전통적 회사법 판례 및 법리에 의지할 수 있게 되므로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해결하고 안정성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단순화된 기업형태를 새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서, 법률적 쟁점에 대한 선례가 많지 않아 혼선

Japanese Companies Act (Part V, Part VI, Part VII and Part VIII), Act No. 86 of July 26, 2005 (“Japan LLC”); the New Zealand Limited Partnership Act 2008 (NZLPA); the New Zealand Companies Act 1993 (“NZ Co”); New Zealand Companies Act 1993 New Zealand Companies Act 1993 (“NZ Co”); the Singapor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t, Chapter 163A (Original Enactment: 42 of 2005) Revised Edition 2006 (31st December 2006) (“Singapore LLP”); the South African Companies Act 2008 (“S Africa Co”); the United Arab Emirates (UAE) Commercial Companies Law, as amended 2013 (“UAE LLC”, “UAE Public and Private Joint Stock Co”);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t, 2000, c. 12 (“UK LLP”); and the United States (Delaware) Limited Liability Company Act, Chapter 18, Delaware Code (“US LLC Delaware”); the Colombian Ley sobre sociedades por acciones simplificadas, Ley Número 1258 de 2008 (“Colombia SAS”).

76) s. 32 of the India LLP and §18-101(c) of the US-Delaware LLC.

이 나타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최근 국제적으로도 소규모기업에 대한 입법 및 운영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크게 우려할 만한 단점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로 단순화된 기업조직 형태로 인하여 혜택을 받을 기업군이 무엇인지의 문제이다. 일차적으로는 ① 폐쇄회사(closely held corporation)와 가족기업(family enterprise)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합과 유사하면서도 유한책임 등 특례가 인정되는 조직 형태의 설립, 운영이 단순화함으로써, 특히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폐쇄회사, 가족기업이 지하경제를 벗어나 공식적인 등록절차를 밟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② 조인트벤처(joint venture)기업의 경우에도 단순화된 기업조직의 수혜자이다. 비탄력적인 조직구조는 전략적 제휴를 실현함에 있어서 결림돌이 된다. 단순화된 조직의 탄력성은 사업파트너간의 합의 내용을 기업운영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③ 전문가 용역기업(professional service firm)의 경우에도 다수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손해배상책임 등을 한정하는데 단순화된 기업조직을 활용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④ 비영리기업의 경우에도 설립, 운용 자체의 비용을 낮추고 공익 업무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할 수 있으므로 단순화된 기업조직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⁷⁷⁾

세째로 각국에서 단순화된 기업형태를 도입한 이후의 성과이다.⁷⁸⁾ ① 프랑스는 2008년 SAS가 새로 도입된 이후, 이에 의해 설립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즉 단순화된 기업형태의 비중은 2009년 신설기업의 10% 수준이다가, 2010년에는 14%, 2011년에는 16%로 상승한바 있다. ② 인도는 2009년 LLP를 처음 도입하였는바, 2012. 5. 까지의 불과 3

77) A/CN.9/WG.I/WP.82, p.4.

78) A/CN.9/WG.I/WP.82, pp.18-19.

년여의 기간 중에 9,395개의 LLP가 설립된바 있다. ③ 일본의 LLC는 2006년 4,066개이던 것이 2010년 15,772개로 증가하였다. 다만 아직도 일본에서는 “주식회사”의 형태가 더 선호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이 있다. ④ 싱가폴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사이에 5,234개의 LLP가 신설된바 있다. 싱가폴에서 LLP는 매해 신설되는 회사의 대략 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⑤ 미국의 LLC도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브라운스웨이크의 경우 모든 기업조직 중 LLC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기준으로 70%에 달하고 있다.⁷⁹⁾ ⑥ 영국에서도 2001년 도입된 LLP는 인기를 얻고 있다. LLP 등록은 해마다 점증하여 2012년에는 52,000개 이상이 등록를 마친바 있다.

제 4 절 소결론

위에서는 분과위원회의 논의 이전에 사무국에서 검토한 자료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분과위원회에서의 논의와 중복을 피한다는 점에서 초점을 각종 국제기구에 의한 소규모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사례와 단순화된 기업조직 도입의 결과 분석에 맞추었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 중 재정지원 사례와 관련하여, 많은 지역에서 국제 기구들이 재정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을 도모하고 있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놓기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분과위원회에서는 소규모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측면보다는 전체 법체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그 중에서도 후술하듯이 분과위원회에서는 소규모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제개선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다음으로 단순화된 기업조직을 도입한 성과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그 도입 이후 소규모기업의 창업이 늘어난

79) 나머지 중 회사는 22%, LLP는 6%, 제정법상 신탁(statutory trust)은 2%를 각기 차지하고 있다. A/CN.9/WG.I/WP.82, p.19.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숫자의 증대만으로 제도의 성공을 속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특히 지하경제가 발달되어 있는 개발도상국 등에서 공식적으로 영업활동을 등록한 사업체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로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사무국의 보고는 그러한 점에서 소규모기업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끝으로 사무국은 분과위원회에 다루어져야 할 쟁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다수는 실제 분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첫째로 각국은 소규모 폐쇄회사 설립절차와 관련하여 그들의 경험을 나누기를 원할 것인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이 문제된다.

- ① 유한책임제도는 쉽게 이용가능한가?
- ② 온라인 등록제도는 가능하며 바람직한가?
- ③ 등록하기 원하는 기업들을 위해 한 곳에서 사무처리가 가능한가?
- ④ 채권자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 ⑤ 기업의 실제 소유자 관련 정보의 공시가 필요한가?
- ⑥ 정부간 및 국가간 정보가 공유되는가?

둘째로 단순화된 기업조직에 있어서 선호되는 내부 구조에 관한 문제이다.

- ① 먼저 단순화된 기업조직은 소규모기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아니면 모든 규모의 기업을 포괄가능한 것이어야 하는가?
- ② 하나의 기업조직형태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아니면 여러개의 기업조직형태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가?

세 번째로 분과위원회가 단순화된 기업설립이 포함할 특성들을 고려할 것인지 여부이다.

제 4 장 사무국 사전 조사자료의 주요내용

마지막으로 분과위원회가 단순화된 기업설립에 관한 업무를 (입법지침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모델법, 입법가이드 또는 다른 형태 중 어느 것으로 상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제 5 장 분과위원회(WG1)에서의 논의 및 검토

제 1 절 개 관

분과위원회(WGI) 제22차 회의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2014. 2. 10.부터 2. 14.까지 개최되었다. 소규모기업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로서는 사실상 첫 회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26개의 회원국과 참관자의 자격으로 비회원국 11개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 기구, 비정부기구가 참석하였다.

금년 분과위원회에서는 주로 단순화한 기업설립, 등록에 관한 법적 기준의 설정이 일차적인 논의안건이 되었다. 이는 궁극적인 목표인 소규모기업이 생성, 성장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서 첫 단추를 뗀 것이라 할 수 있다. 위 표현에서도 나타나듯이 분과위원회는 기업설립(incorporation)과 등록(registration)을 구분하고 있다.⁸⁰⁾ 특히 영세기업에 있어서는 첫 단계로서의 단순화한 등록절차에 관심을 기울였다.

분과위원회는 UNCITRAL 차원에서의 논의의 의의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표준적인 기업등록 절차가 마련되는 경우 소규모기업의 국경간 거래가 증가할 것이며, 각 나라의 기업형태의 차이로 인해 어떤 나라의 기업조직이 다른 나라에서 배척되는 현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⁸¹⁾ 소규모기업도 국제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전자상거래나 소규모 장인기업들의 경우 그러한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특히 소규모기업의 경우 각국의 특유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이하에서는 분과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내용을 크게 8가지로 나

80) A/CN.9/800, p.11.

81) A/CN.9/800, p.2.

누어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그 중 제2절(입법작용의 형식적 측면의 쟁점) 및 제3절(논의범위의 확정)은 전반적인 논의의 틀에 관한 서설적인 고찰이라고 할 수 있고, 제4절부터 제9절까지가 본격적인 개별쟁점이다.

제 2 절 입법작업의 형식적 측면의 쟁점

앞의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소규모기업 관련 법제의 도입 배경 및 태양은 각 나라마다 다르다. 단순화된 사업조직형태는 전반적인 법제 개혁의 산물인 경우도 있고, 특히 소규모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의 일환에서 단순화된 사업조직이 도입된 경우도 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각국의 사례에 기초한 모범실무를 망라한 UNCITRAL 차원의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UNCITRAL은 입법관련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왔다. 즉 각국의 협의에 따른 결과물을 입법가이드(legislative guide), 모델법(model law)으로 발표하거나 이를 혼합하는 형태의 결과물을 내놓기도 했다. 소규모기업 관련 법제 관한 논의에 있어서도, 선결문제로서 어떤 형태로 입법작업을 진행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형식적 차원에서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단일 조직을 전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조직을 망라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순차로 살펴본다.⁸²⁾

82) 그밖에도 A/CN.9/WG.I/WP.82, pp. 3-4는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 새로운 기업조직을 수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검토하고 있다. 첫째는 기존의 기업법제의 근본 체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수정을 가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기존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혼선을 덜 수 있다는 점과 이를바 학습효과(learning effect: 새로운 체제를 활용할 때 기존체제의 바탕 위에 추가적인 학습만 실시하면 됨)와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기존 기업들이 이용해왔던 지배적인 조직형태를 활용할 수 있음)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로 새로운 기업조직을 도입하되 이를 명시적으로 전통적인 기업규율 체제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기존의 체제와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학습효과, 네트워크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별도의 새로운 조직이라는 점에서 특정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 측면도 있다. 특히 기존 조직형태의 공백을 신규 조직형태에 의해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바 보충적인

1. 입법형태

분과위원회에서는 궁극적인 입법형태를 입법가이드로 할 것인지, 모델법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상당한 논의를 하였다. 입법가이드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은 (i)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각 지역 국제기구에서 통일된 회사형태를 창설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였고, (ii) 모델법은 화려한 외관적 성과와 달리 각국에서 실질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iii) 입법가이드는 고정된 문건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추가조항, 설명이 보충될 수 있으므로 매우 탄력적이고, (iv) 입법가이드의 다양한 주석 및 권고가 부여하는 세밀함 및 탄력성은 특히 소규모기업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입법을 도입하고자 하는 각국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즉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때, 각국 입법당사자들이 소규모 기업 법제를 도입하면서 각국의 상황에 맞게 변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모델법은 주장하는 입장은 (i)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인 모델법의 예가 존재하는바, 모델법의 제정은 관련 분야의 발전에 매우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고, (ii) 모델법의 비탄력성에 대한 비판은 모델법을 하나의 고정된 문건(rigid instrument)로 보는 도그마에서 나오는 것인바, 하나의 모델법에 다양한 접근방식을 포함하여 탄력성을 부과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iii) 입법가이드가 주장하는 세밀함 및 탄력성은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의 어려움을 뜻하게 되어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iv) 특히 개발도상국의 입법당사자의 입장에서도 광범위한 입법가이드 보다는 주요한 사항에 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적으로 새로운 입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가장 큰 혁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방안이다.

최적의 판단인 기본조항(default rule)이 정해져 있는 모델법이 사용하기에 용이할 것이며, (v) UNCITRAL의 목적인 각국의 법제간 조화를 이루기에도 모델법을 도입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vi) 입법가이드는 모델법과 달리 다양한 견해를 집대성하는 것으로서 치열한 논쟁 및 의견합치가 전제되는 것은 아닌바, 모델법을 추진하다가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경우 입법가이드 형태로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그 역은 어려우므로, 일단 시작은 모델법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

그밖에 병행안으로서 모델법과 입법가이드를 함께 준비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분과위원회의 결과물을 더욱 풍성히 할 수 있고, 이용자 입장에서도 각국의 사정에 따라 모델법 또는 입법가이드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특히 소규모기업들을 위하여는 모범정관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유력하게 제기되었다. 각국 입법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델법과 달리 모범정관은 직접 기업활동을 하는 소규모기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⁸³⁾

모델법, 입법가이드를 선호하는 견해와 병행안을 주장하는 입장 등이 다양하게 제기되었는바, 초반부에 위 문제를 확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는 것보다는 개별 쟁점의 문제를 파악한 다음 입법형태를 판단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져서, 일단 위 논의에 대한 결론은 유보하게 되었다.

2. 단수의 조직형태만을 입법화할 것이지 여부

소규모기업에 관한 각국의 사례는 다양하다. 입법의 형태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복수의 기업조직 형태를 열거하는 방식이다. 다른 방식은 하나의 기업조직을 규정하되

83) A/CN.9/800, p.7. 실제 단수의 국가에서 소규모기업에 관한 모범 정관이 제시되고 있다.

그 조직에 관한 탄력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실제 다양한 기업수요를 반영하는 것이다.⁸⁴⁾ UNCITRAL의 논의에서도 복수 조직형태를 전제로 할 것인지, 단수의 조직형태를 도입할 것인지가 검토되었다.

복수 조직형태 규정을 선호하는 입장은 모델법 또는 입법가이드에 1인 기업, 조합(partnership), 유한책임조합(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등의 다양한 메뉴를 규정하는 것이 소규모기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기업가의 편의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⁸⁵⁾ 각 기업조직들은 ① 유한책임 및 다른 회사설립상의 쟁점(limited liability and other aspects of formation), ② 내부지배구조(internal governance), ③ 신인의무(fiduciary duty) 등 관점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으므로⁸⁶⁾, 별도 조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반대로 단수 조직형태론은 광범한 탄력성을 가진 단일조직형태(single model with great flexibility)가 UNCITRAL 입법논의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본다. 각종 중간적 형태(이른바 hybrid form)은 단일 조직에 계약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⁸⁷⁾ 복수의 조직형태를 하나의 입법형태에 담는 경우 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UNCITRAL의 논의 결과, 일단은 후자에 의하되 각종 변형형태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을 전제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84) A/CN.9/800, p.7.

85) 나아가 일부 국가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협동조합(cooperative)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86) A/CN.9/WG.I/WP.82는 다음 각 기준에 의하여 조직형태를 분류한바 있다. 즉 ① 유한책임 및 다른 회사설립상의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a) 법인격, (b) 재무정보의 공시, (c) 설립요건, (d) 설립시 필요한 발기인의 수를 기준으로, ② 내부지배구조와 관련하여서는, (e) 지분권자들의 재무적 권리, (f) 내부지배구조의 창설에 관한 계약상의 자유, 지분의 이전가능성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87) 한편 이렇듯 계약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에 대하여 계약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이 이해관계자의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반론도 가능할 것이다.

제 3 절 논의 범위의 확정

UNCITRAL에서 논의하는 유연하고 접근가능한 기업조직 형태는 소규모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기 앞서 소규모기업의 범위에 관하여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소규모기업의 전형적인 예로는 소규모폐쇄회사, 가족기업, 조인트벤처, 전문가 서비스기업 등이 있으나,⁸⁸⁾ 이러한 막연한 범위보다는 향후 구체적인 논의대상을 확정하여 이를바 선긋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각국의 예를 보면 특히 세제상 또는 보조금 제공 등 지원의 측면에서 소규모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별도의 카테고리로 설정한다.⁸⁹⁾ UNCITRAL 차원의 입법시에 구체적으로 매출액, 종업원수, 자산 등 구분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향후 정교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부분이다.

오히려 초기 단계에서 문제된 쟁점은, 영세기업(micro business)을 소기업(small-sized business) 또는 중기업(middle-sized business)과 구분되는 별도의 카테고리로 설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따르면, 영세기업에 대하여는 더 단순하고 특별히 그 수요에 맞춘 입법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영세기업은 1인 기업인데 복잡한 절차 하에서 이를 공식적인 기업조직으로 변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⁹⁰⁾ 이 입장은 영세기업과 소기업에 관한 입법 수요가 구분된다고 본다.

반면 영세기업과 소기업을 포괄하여 규율하자는 입장은 영세기업과 소기업을 염별하는 것이 오히려 소규모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 환경 제공에 장애가 된다고 본다. 기업의 유기적 성장을 전제로

88) A/CN.9/800, p.5.

89) A/CN.9/800, p.5.

90) A/CN.9/800, p.11.

할 때, 영세기업과 소기업간 법제에 차이가 있으면 성장하는 기업이 혼란을 느낄 수 있다. 영세기업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형식성, 정형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세기업과 소기업을 따로 규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각국의 사례를 보면, 세계상 또는 보조금 지원 측면에서는 기업 규모가 중시되는 반면, 다른 분야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중요요소가 아닌 경우도 많다. 일례로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자본금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도 있으며, 원래 영세기업을 위해 도입된 특정 제도가 전체 기업군으로 확장되는 경우도 있다.⁹¹⁾

이렇게 볼 때 적어도 일부 쟁점인 경우 영세기업과 소기업을 포괄하여 다루어도 무방할 것이다. 유한책임, 법인격, 제3자 및 채권자 보호, 사업등록/설립절차 등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UNCITRAL의 경우에도 먼저 소규모기업 전반에 공통되는 주제를 다루고, 나중에 영세기업에 특유한 쟁점을 다루는 것이 현명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절 사업등록

1. 사업등록과 기업활동의 공식화

사업등록(business registration) 절차를 신속, 간이화 하는 것은 창업을 용이하게 한다는 의미 이외에 이미 창업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공식통계에 잡히는 않는 소규모기업들을 공식화(formalize)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국제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 위 ‘공식화’가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여 왔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⁹²⁾

91) A/CN.9/800, p.8.

92) A/CN.9/800, pp.13-14, OECD 국가에 있어서 비공식적 경제(informal economy)의

먼저 OECD에 따르면, 더 많은 기업들이 공식화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투자확대, 세수증대 및 이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 거래의 증진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⁹³⁾ 다음으로 기업발전을 위한 기부자위원회(DCDE: Donor Committee for Enterprise Development)⁹⁴⁾는 지원대상 기업들의 사업등록 등 공식화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면서 기부자 및 UN 기관들에게 관련 기업들의 공식화를 유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사업등록을 통한 공식화의 긍정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공식화는 기업활동의 투명성을 촉진할 수 있고 그 결과 당국의 지원 및 적절한 규제가 가능하게 되는바, 이 관점에서도 사업등록을 간이화할 필요가 있다.

2. 사업등록 간이화의 방식

먼저 각국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콜롬비아의 소규모기업 형태인 SAS의 온라인 등록에 따르면, 2시간 이내에 사업등록 절차가 마무리된다. 즉 온라인 등록시 (i) 기업명과 과세고유번호신청을 포함한 계정의 창설, (ii) 정관 제출(모범 정관도 이용가능), (iii) 수수료 납입, (iv) 전자서명, (v) 상무부(Chamber of Commerce)에 의한 검인 등을 마치면 사업등록 절차가 마무리된다.⁹⁵⁾ 우크라이나의 경우 최저자본 요건과 함께 제출서류의 공증요건을 폐지하였고, 인도네시아는 일반적인 영업허가(general trading licence)와 사업등록을 동시에 경료할 수

규모는 공식적 경제(formal economy)에 비하여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93) OECD, Promoting Pro-Poor Growth: Policy Guidance for Donors (2007) (available at <http://dx.doi.org/10.1787/9789264024786-en>), p.76.

94) 이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사적기업들의 발전을 지원하는 UN 기관들과 기부자들의 포럼이다. 상세한 내용은 www.enterprise-development.org 참조.

95) A/CN.9/WG.I/WP.82, p.6; A/CN.9/800, p.7.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알바니아는 공중여부를 기업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⁹⁶⁾

이러한 각국의 사례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각국이 자동화된 등록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른바 “e-Regulation”). 이에 따라 예컨대 엘살바도르의 경우 기업가들이 자동화된 프로그램인 MiEmpresa에 의해 사업등록을 하면 동시에 다수의 감독기관에 등록이 이루어지고, 각 기관들로부터 이용가능한 신용, 직원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수령할 수 있게 된다.⁹⁷⁾ UNCTAD 이외에 세계은행(World Bank)과 IFC, USAID 등도 기업설립 등 사업등록 절차를 합리화하고 한 곳에서 설립 및 등록 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법제개선 작업을 돋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사업등록 간이화 방식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등록 내지 온라인 등록이다. 실제로 온라인 등록은 기업의 부담 절감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⁹⁸⁾ 또한 이른바 “one-stop service”를 통하여 한 곳에서 설립 및 등록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권한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기관의 이익이 아니라 수범자의 관점에서 담당 업무를 재분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⁹⁹⁾ 마지막으로 공증제도 역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증제도에 관하여는 각국의 입법례가 엇갈린다. 즉 소규모기업에 관하여 이를 폐지한 나라들도 있는 반면 아직도 공증인에게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원래 공증인은 사업등록시에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해당 기업과 거래하는 제3자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96) A/CN.9/WG.I/WP.81, pp.15-16. 그밖에도 Burkina Faso라는 국가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등록절차를 간이화하여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97) A/CN.9/WG.I/WP.81, p.16.

98) A/CN.9/800, p.7.

99) A/CN.9/800, p.7. 실제로 한 곳에서 필요한 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를 일률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공증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시간 및 비용의 범위 내에서 공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 예컨대 공증인 및 규제당국간의 전용 온라인시스템 등을 마련하여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¹⁰⁰⁾

3. 추가 검토 대상

사업등록 간이화는 일차적으로 소규모기업의 창업을 용이하게 하고 그들을 공식화하기 위하여 논의되는 것이지만 이로 인한 혜택은 소규모기업 뿐 아니라 모든 규모의 기업에 미친다. 분과위원회가 주요 쟁점으로 사업등록을 논의하는 것도 이처럼 중요한 파급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사업등록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향후 UNCITRAL에서의 논의시에 각국의 상황이 담긴 모범실무를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분과위원회는 사무국에 아래 각 쟁점에 관한 추가자료를 준비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차기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다.

- (a) 사업등록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보
- (b) 사업식별을 위한 고유번호의 부여
- (c) 정보보호와 비밀유지
- (d) 해당 사업에 고유한 상호를 검색할 능력
- (e) 쉽게 업데이트되는 정보
- (f) 등록된 정보에 관한 접근권을 갖는 자(신용공여기관, 일반 대중 등 포함)
- (g) 관련 당국간 사업등록된 정보의 공유

100) A/CN.9/800, p.7.

- (h) 등록비용의 저가 또는 무비용 여부
- (i) 신속하게 등록되는지 여부
- (j) 최소한의 단순한 절차에 의하는지 여부
- (k) 해당 사업의 변천에 관한 기록이 유지되는지 여부
- (l) 이용자에게 모델정관이 전자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와 이러한 모델정관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
- (m) 사업자에게 사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수단을 제공하는지 여부
(과세고유번호의 부여 등)
- (n) 사업자등록 증명원의 부여

제 5 절 최저자본요건

1. 견해의 대립

원래 법정 자본금 요건은 유한책임제도 하에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설립시 다액의 법정 자본금을 요구하는 것이 소규모기업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UNCITRAL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문의되었다. 만약 각 국가가 서로 다른 최저자본요건을 부과한다면 자본금 요구수준이 낮거나 이러한 규제가 아예 없는 나라가 기업설립지로 선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¹⁰¹⁾ 국제적인 균형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필요설은 전통적 논거를 근거로 한다. 즉 ① 기업에 유한책임이라는 특권을 부여한데 따른 반대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② 일단 기업활동을 개시하기로 하였으면 이에 대한 굳은 의지(commitment)를 보여주는 자금의 투입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③ 창업시에 어느 정도 자금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만큼 최

101) 예컨대 기업의 설립지를 쇼핑하거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국가의 법을 설립준거법으로 활용하려는 유인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저 자본금의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될 뿐 최저자본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불요설은 최근 들어서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주요한 주장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최소자본요건을 부과하는 것이 실제로 회사채권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관한 의문이 있다. 자본금이 회사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지 않은 이상 채권자 보호의 실효성을 기하기는 쉽지 않다. ② 최소자본요건의 부과는 많은 소규모기업들이 공식적인 경제(formal economy)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③ 필요설도 인정하듯이 최저자본금 요건을 과도하게 설정하면 창업에 큰 저해가 된다. 따라서 필요설에 의하더라도 “적정한” 최저자본금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바, 과연 어떠한 수준이 적정한 것인지를 두고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 마지막으로 ④ 최저자본금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실제로는 더욱 효율적인 다른 제도를 활용하는 편이 낫다. 예컨대 (i) 경영자의 행위기준 설정, (ii) 기업정보의 공개(특히 잉여금의 적립 및 처분에 관한 정보), (iii) 신인의무 위반시 경영진의 엄격한 책임 규정, (iv) 내외부 감사 기타 모니터링 제도의 활동, (v)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설립된 신용평가기관(credit bureaus)에 의한 정기적인 평가, (vi) 대주주에게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법인격 부인론, (vii) 회계기준의 엄격화(특히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하고, 이익배당에 관하여 특별한 요건을 설정), (viii) 공적기관에 의한 감독의 활성화,¹⁰²⁾ (ix) 채권자가 회사와의 계약을 체결할 때의 각종 방어장치에 관한 집행력 인정 등이 그것이다.

한편 이러한 필요설과 불요설의 첨예한 대립에 관하여 절충적인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절충적 해결방안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a) 이를바 점진적 자본요건제(progressive capital requirement)도 고려될 수

102) 각종 감독규제 기관 및 지배구조개선에 관한 단체를 의미한다.

있다. 이는 회사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자본을 적립하는 형태이다. 아직 점진적 자본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하여 회사 상호명에 그 취지를 부기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설립시에는 명목상 자본 또는 무자본으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각 사업연도마다 순이익의 일정부분을 특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하도록 강제하는 법제와, 일정한 유보금 수준에 이를 때까지 배당을 제한하는 법제도 위 점진적 자본요건과 비슷한 이론적 바탕 위에서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b) 자본금 요건이 유한책임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연동시키는 절충안도 논의되었다. 즉 일정 매출규모에 이르기까지는 최저자본금 없이도 유한책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되, 그 수준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 계속 유한책임을 누리려면 최저자본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2. 검 토

위 견해들 중 절충안은 필요설과 불요설의 난점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지만, 큰 지지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기업의 성장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일선 및 기업과 거래하는 상대채권자들에게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잡성은 특히 소규모기업에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는 최저 자본요건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은행도 최저자본요건이 오히려 기업의 사업발전을 저해하였고, 의도했던 규제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분석한바 있다.¹⁰³⁾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사전적으로(ex ante) 모든 회사에게 최저자본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높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사후적으로 사기적 행위가 발행한 경우에만 국가가 관여하는 방식이 고려되는 이유이다.

103) A/CN.9/800, pp.13-14.

위 세계적 추세와 폐지설이 주장하는 다양한 이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UNCITRAL 차원의 논의에서는 일단 최저자본 폐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폐지설이 회사채권자 보호의 방법으로 가장 크게 의존하는 것은 회사채권자가 회사와 거래하면서 체결할 수 있는 각종 계약적인 보호장치들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이상, 사전적이고 무차별적인 안전장치인 최저자본 요건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한 상세한 공시는 이러한 계약적 보호장치의 작동을 위한 전제 요건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적 장치들은 불법행위 피해자 등 비자발적인 채권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피해자의 희생문제는 문제는 소규모기업처럼 변제자력이 크지 않은 경우 더욱 불거질 우려가 크다. 통상적으로 사전적이고 무차별적인 안전장치는 높은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지만, 사기적 행위의 발생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때에는 사전적 장치가 효과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에 대하여 최저자본금을 설정할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었다.¹⁰⁴⁾

제 6 절 유한책임과 법인격

1. 유한책임

제도적으로 볼 때 유한책임원칙(principle of limited liability)은 기업가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위험제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인기업, 조합 등 전통적인 기업형태를 선택하고 있는 다수의 소규모기업은 유한책임의 특권을

104) 한편 독일의 경우 일반적인 유한회사(GmbH)의 최저자본요건은 25,000유로이지만, 그 이하의 자본금을 설정하더라도 유한회사로서 운영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그 회사의 명칭에는 “GmbH” 대신에 “UG(Unternehmengessellschaft/Entrepreneurial Company)”을 표시하여야 한다.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유한책임원칙을 모든 소규모기업에 확장하여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관하여 UNCITRAL 차원의 논의가 있었다.

유한책임원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수의 견해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¹⁰⁵⁾ 유한책임은 해당 기업주 입장에서는 특권이지만, 그 기업과 거래한 상대방, 즉 거래처, 대출기관, 근로자의 피해도 역시 고려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기업형태가 무한책임을 부담하는가 유한책임을 부담하는가를 대외적으로 명확히 나타날 필요가 있다.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기업조직은 일종 유한책임을 전제로 한 형태이다.

2. 법인격

앞서 논의한 유한책임은 종종 법인격과 연결되기도 한다. 즉 전통적으로 법인격을 갖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주와 독립된 기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주에 대한 책임 이외에 별도에 기업 자체의 유한책임이 논의될 여지가 없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그러한 도그마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예컨대 기업주가 별도 법인격 없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영업채권자들이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소유, 이용하는 개인용 자산이 아닌) 영업용 자산에 한정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입법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인격의 다른 측면으로는 각종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로서의 기능이다. 원래 법인격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데에는 개인들의 집합적 활동에 있어서 개인들과는 구분되는 단체를 하나의 인격주체로 취급함으로써 권리, 의무를 용이하게 귀속시키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따라서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구성원들이 함께 해

105) A/CN.9/800, p.7.

당 권리, 의무를 갖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전통적, 형식적인 접근방식에 대하여는 오래 전부터 상당한 반론이 제기되어 왔다. 법인격 자체가 다분히 도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설사 법인격으로 공적인 신청, 등록절차 등을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정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권리, 의무를 귀속시키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나라들이 법인격이 없는 단체인 경우에도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있다.¹⁰⁶⁾

3. 검 토

유한책임과 법인격에 관하여는 다양한 조합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어떠한 조직이 법인격이 없으면서도 유한책임을 인정받는 경우와 반대인 경우를 모두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UNCITRAL에서의 논의는 선험적인 결론, 즉 법인격이 있는 경우에만 유한책임이 인정된다거나, 법인격이 없으면 곧 무한책임을 뜻한다거나 하는 등의 결론을 상정하지 않고, 먼저 개별적인 조직형태에 필요한 특성을 논한 다음 이러한 개별 조직형태에 가장 적절한 책임형태 및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적어도 논의 시작 단계에서는 법인격 및 유한책임에 대한 고정된 원칙을 정해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쟁점은 법인격 부인론이었다. 주지하듯이 법인격부인론은 기업의 채권자가 일정 요건하에 해당 법인의 인격을 부인하면서 (원래는 유한책임의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배후의 기업주의 개인재산에까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장치이다. 문제는 법인격부인은 기업조직의 유한책임이라는 중요한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파괴력이 있는 반면, 각국의 법인격 부인 요건에 관한 접근방식은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유한책임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격 부

106) A/CN.9/800, p.7. 한국 민사소송법 제52조 참조.

인론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든 나라들이 공감하였다. 다만 과연 UNCITRAL 차원에서 부인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만약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면 어떠한 요건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였다.¹⁰⁷⁾

제 7 절 분쟁해결

1. 분쟁유형별 쟁점

기업은 경영활동 중에 다양한 분쟁에 휩쓸릴 수 있는바, 이를 분쟁 당사자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i) 내부적 분쟁, 즉 구성원들간의 분쟁 또는 구성원들과 경영진의 분쟁, (ii) 외부적 분쟁, 즉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소비자, 금융기관, 근로자 등 제3자와의 분쟁, (iii) 도산절차에서의 분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유형에서 소규모기업은 어떠한 고려를 받아야 하는지 나누어 설명한다.

가. 내부적 분쟁

먼저 다수지분 및 경영권을 보유하는 지분권자와 상대적으로 경영에서 소외된 소수지분권자간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이 표면화된 경우 후술하는 전문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 방안도 있으나, 법제상으로는 이른바 탈출권(exit right)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재무적 투자자의 입장에 있는 소수지분권자로 하여금 일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정한 가격을 받고 해당 기업을 떠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탈출권의 적용요건을 두고 또다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적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위 조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수지분권자가 수령할 지분에 대한 공정한 평가이다. 가장 단순하게는 청산가치로 평

107) A/CN.9/800, p.7.

가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지만, 가령 영업권 등을 포함하여 가치평 가하기로 하는 경우 영업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¹⁰⁸⁾ 반면 다수지분권자의 입장에서도 소수지분 권자를 일정 요건 하에 축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둔다든지(이른바 squeeze-out 또는 cash-out right), 원래의 구성원간 계약에 명시적인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이같은 탈출권 및 축출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¹⁰⁹⁾

다음으로 지분권자와 경영진간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경영권 분쟁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경영진의 비위행위에 대한 지분권자들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보기로 한다. 우리 상법을 포함하여 대다수 국가의 입법례는 대규모공개회사인 경우 투자자들에게 대표소송 또는 집단소송의 형태로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나아가 소규모 기업인 경우에도 이러한 대표소송에 유사한 제도를 법제상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실제로 미국의 델라웨어 유한책임회사법은 주식회사의 주주와 마찬가지로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에 대하여도 대표소송 제기권을 인정한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원래 대표소송은 승소의 성과가 회사로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행동 문제 (collective action problem)가¹¹⁰⁾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투자규모가 적은 소규모기업에 더욱 크게 발생한다. 따라서 제도상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활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108) A/CN.9/WG.I/WP.82, p.16.

109) 예컨대 영국의 유한책임조합법에는 “No majority of the members can expel any member unless a power to do so has been conferred by express agreement between the members.”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유사한 조문은 인디아 유한책임조합법 등에도 있다. A/CN.9/WG.I/WP.82, p.15.

110) 즉 대표소송 승소로 인한 시간 및 패소위험은 개인적으로 부담하지만 승소로 인한 성과는 모든 지분권자가 함께 누리기 때문에 소제기에 큰 실익이 없게 되는 문제이다.

나. 외부적 분쟁

기업 외부의 분쟁 중에서는 기업이 판매한 물품에 불만을 갖는 다수소비자들과의 분쟁이 자주 문제된다. 소규모기업은 이러한 분쟁에 일일이 법적으로 대응할 인적, 물적 자원을 갖지 못한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정식 재판을 통한 문제해결에는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원이 아닌 제3자의 기관이 중립적 입장에서 일차적인 판단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비록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외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둘러싼 분쟁인 경우, 금융기관은 금융시장에서의 평판 등을 고려하여 중립적 제3자 기관의 구속력 없는 판단에도 순응할 가능성이 높다.¹¹¹⁾

다. 도산 분쟁

소규모기업은 그 본질상 도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모험적 기업(venturous enterprise)인 경우가 많다. 만약 창조적인 기업가가 최초 시도에서 도산한 다음 재기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다는 기업가 정신이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소규모기업의 채권자들 역시 소액거래채권을 가진 다수의 영세한 채권자들인 경우가 많아서 빠른 결론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소규모기업이 도산에 이른 경우 그 사회적인 파급력도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많은 나라에서 영세기업, 소기업인 경우 신속절차(expedite regime)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도산절차인 경우 그 전반적인 내용을 제5 분과위원회(WG V)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 분과위원회에서는 소규모기업 도산에 관한 신속절차의

111) A/CN.9/800, p.15.

필요성만을 지적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추가적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하였다.

2. 전문가에 의한 조정 및 전문법원 설치

기업을 둘러싼 분쟁은 개인들간 분쟁에 비하여 쟁점이 복잡한 반면 다수이해관계자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속한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은 더욱 그러하다. 반면 일반법원은 과다한 사건을 담당하여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고, 기업분쟁에 관한 경험 및 노하우가 많지 않아서 당사자들이 법원의 판단에 승복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신속하고 실효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전문가들에 의한 사전 조정절차가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소규모기업의 경우에도 투입되는 시간 및 비용을 고려할 때 간이한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실익이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식 재판기구에 있어서도, 상사를 전담하는 특별법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네덜란드의 예가 있다. 암스텔담 항소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전담부(Dutch Enterprise Chamber)는 특히 폐쇄회사에 있어서 지배주주를 상대로 한 분쟁에 있어서 높은 평판을 누리고 있다. 위 전담부에 제출된 사건들을 대부분 가처분 단계의 신속한 판단을 거쳐 마무리되고 있다. 위 전담부의 성공요소로는 ① 신속성 및 완전성, ② 기업내부자들에 대한 존중, ③ 쟁점 파악능력, ④ 결정의 안정성, ⑤ 해당 사건이 다른 회사관여자들에게 미칠 영향의 고려 등이 언급되고 있다.¹¹²⁾ 이처럼 기업사건을 전담하는 특별법원 또는 전담부는 네덜란드 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¹¹³⁾

112) A/CN.9/WG.I/WP.82, p.16.

113) 콜롬비아의 예에 관하여, Francisco Reyes Villamizar, The Colombian Simplified

제 8 절 소규모기업 범제 남용의 방지와 관련정보 공유

1. 기업조직형태의 남용우려 및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

지금까지의 논의는 소규모기업의 설립, 운영절차의 단순화를 통해 각국의 기업활동을 활성화하자는 다분히 긍정적인 측면의 접근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듯 소규모기업 조직설립을 간이화하고 단순화하는 것이 테러, 범죄 등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조직이 범죄, 자금세탁의 도구로 사용되는 현상에 대하여는 일찍이 OECD¹¹⁴⁾ 및 UN의 산하기구인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가 우려를 표명한바 있다.¹¹⁵⁾ 각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첫 번째가 규제기관에 의한 정보접근의 강화이다. 싱가폴은 one-stop 사업등록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기관의 개별사업자들의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도 금융정보의 통합 감독에 관한 작업반(task force)를 구성하여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던 조사, 검사, 기소권한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뉴질랜드는 최근 회사법 및 유한책임조합법을 개정하여 회사등록관

Corporation: An Empirical Analysis of a Success Story in Corporate Law Reform (November 2013) (Available at SSRN: <http://ssrn.com>) 참조.

114) OECD, Behind the Corporate Veil: Using Corporate Entities for Illicit Purposes, 2001 (available at <http://www.oecd.org/daf/ca/behindthecorporateveilusingcorporateentitiesforillicitpurposes.htm>)

115)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성 등에 관한 국제적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그 목표는 위 분야에 관한 회원국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회원들이 위 범죄행위를 인지하고 범죄결과물을 몰수하는 것 등을 돋는 것이다. 관련한 내용은 www.unodc.org/unodc/en/money-laundering/index.html?ref=menuaside 참조.

(Companies Office Registrar)에게 신설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¹¹⁶⁾

두 번째는 국제공조의 강화이다. EU는 2012. 6. 13. 도입된 새로운 지침을 통하여¹¹⁷⁾ EU회원국들의 중앙등록관, 상사등록관, 회사등록관들간의 상호 공조를 규정한바 있다.¹¹⁸⁾ 앞서 언급한 UNODC 역시 이러한 국제공조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례로 기업조직형태를 사용한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성 등을 규제하는 각국의 법령을 정리하고 각 국가들의 입법작용을 조언할 뿐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특정하는 등 기업조직이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¹¹⁹⁾

세 번째로 정보의 진실성 보장 및 법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1989년 설립된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 및 권고안을 제시해 왔다. 1990년 처음 발표되고 2012년 수정된 권고안에 따르면 각국은 회사의 배후자 또는 진실한 소유자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각 기업에 관련사항의 공시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¹²⁰⁾ 법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위 권고안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위반행위의 가별성 및 위험성에 비례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116) Companies and Limited Partnerships Amendment Bill, NZ House of Representatives Supplementary Order Paper No. 403, 19 Nov. 2013.

117) Directive 2012/1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12 amending Council Directive 89/666/EEC and Directives 2005/56/EC and 2009/10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interconnection of central, commercial and companies registers Text with EEA relevance.

118) 다만 이에 대하여는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A/CN.9/800, p.7.

119) www.unodc.org/unodc/en/money-laundering/imolin-amliid.html?ref=menuaside 참조.

120) International Standards on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the Financing of Terrorism & Proliferation: The FATF Recommendations, Part E on Transparency and Beneficial Ownership of Legal Persons and Arrangements, in particular, Recommendation 24.(www.fatf-gafi.org/media/fatf/documents/recommendations/pdfs/FATF_Recommendations.pdf)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하여는 모든 신설 기업조직들로 하여금 은행계좌를 보유하도록 요구할 것을 권고한다. 이미 까다로운 감독을 받고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은 정부를 대신하여 기업자금이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고 있다.¹²¹⁾ 이러한 점에서 기업의 거래가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실제 정보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2. 검 토

특히 불법적 거래 및 지하경제의 규모가 큰 국가에서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간이화된 기업조직을 확대하는 경우,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위 언급한 불법적인 목적에의 남용은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UNCITRAL 단계에서 많이 논의된 것은 소규모기업의 배후의 소유자 내지 실질 소유자를 밝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실질적 소유자에 관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i) 해당 기업과 거래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제 거래의 경제적 주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시작 및 계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 결국 해당 기업의 영업활동의 상대방의 보호 측면에서 위 정보가 유용할 수 있다. (ii) 해당 기업이 실제로 자금세탁 등 범죄를 위한 도구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국과 국제기구들이 주목하고 있는 점이다.

기업의 실제 소유자를 파악하는 것이 위 목적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기업조직의 설립, 등록 단계에서 이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즉 설립, 등록의 요건 자체에 이를 내포시킨다면 배후자에 의한 기업조직 남용

121) A/CN.9/WG.I/WP.82, pp.13-14.

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위 요건의 부과가 소규모 기업의 설립, 등록을 촉진하고 공개시장으로 끌어내려는 노력에 다소 역행하는 측면은 있지만, 남용방지 또한 새로운 입법이 갖추어야 할 미덕이라고 할 것이다.

제 9 절 내부 지배구조와 신인의무

마지막으로 UNCITRAL의 입법에 소규모기업의 내부 지배구조 및 경영진의 신인의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도 논의되었다. 기업 내부 자들의 대외적인 활동 내지 책임이 문제되는 소규모기업의 설립 및 등록, 유한책임, 법인격 등 쟁점과 달리 여기에서 논하는 문제는 기업 내부자들 사이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폐쇄적이고 내부자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 소규모기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전반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자치와 계약관계가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1. 내부 지배구조(Internal Governance)

단순화된 소규모기업 조직은 전반적으로 보아 조합(partnership) 형태를 떨 수도 있고 회사(corporation) 형태를 떨 수도 있다. 내부 지배구조 관점에서 어떠한 차이를 갖는가?

먼저 조합의 경우 광범위한 계약의 자유를 갖게 된다. 어떠한 식으로 내부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업무를 분장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조합원들간에 체결되는 운영계약에 의하여 결정된다. 물론 대부분의 국가는 관련법령에서 운영계약 중 포함되어야 할 일부 사항을 규정하기는 한다. 예컨대 운영계약의 사후적 변경, 영업의 매각 등의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의 만장일치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위 법령상 조항들은 기본조항(default rule)이므로 운영계약을 통하여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모든 조합원이

직접 경영을 담당할 수는 없으므로, 운영계약 중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는 방식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¹²²⁾

한편 회사의 경우 설사 그것이 폐쇄적, 소규모회사를 상정하는 경우에도 조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상당한 계약의 자유가 있고, 주주간 계약(shareholder agreement)이 미치는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조합과 유사한 점이 있다. 다만 회사를 규율하는 법령은 강행적인 요소가 많다. 입법례 중 나타나는 강행규정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목적으로 한다. 즉 주주들이 경영진을 선택하고 해당 경영진이 그 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다. 소규모 주식회사인 경우 대주주가 곧 경영진으로 선임되는 예가 많으나, 위 강행조항에 따른 선임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이다.¹²³⁾

이러한 차이점을 기초로 향후 UNCITRAL 입법안에 포함될 내부 지배구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살펴본다. 어떠한 형태의 조직이든 계약자유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경영진이 이익충돌의 상황에서 그 위반책임을 면하기 위해 밟아야 할 절차 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각국간 통일적 규율을 위해 강행규정을 둘 필요도 있다.¹²⁴⁾ 경영진의 숫자에 대하여 법령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요건을 갖춘 소규모기업인 경우 강행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¹²⁵⁾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토론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향후 모델 정관 또는 운영계약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다.¹²⁶⁾ 영세기업, 소기업인 경우 구성원들간의 합의를 통하여 운영계약을 완성하는 것 자체에 곤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122) A/CN.9/WG.I/WP.82, p.9

123) A/CN.9/WG.I/WP.82, p.10.

124) A/CN.9/800, p.16.

125) A/CN.9/800, p.16. 우리나라의 상법도 소규모주식회사인 경우 1인 이사체제가 가능하다.

126) A/CN.9/800, p.16.

2. 신인의무(Fiduciary Duty)

기업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자로부터 소수 지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 지배구조를 정교하게 규정하고 업무집행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방안도 있으나, 다양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기업실무상 모든 상황을 예측하여 구체적인 판단요소 및 절차를 명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른바 구체적인 규율로서 ‘Rule’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추상적인 판단기준인 ‘Standard’를 도입하여 경영진 등이 행위의 잣대로 삼을 수 있는 일반조항을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신인의무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더라도 경영진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일반적인 행위규범을 제시하여, 그 준수여부는 사후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판단된다. 신인의무에 관하여 미국에서는 통상 주의의무(duty of care)와 충실의무(duty of loyalty)로 분류하여, 전자는 일반적으로 적정한 주의를 다하여 업무를 처리할 의무인 반면 후자는 이해충돌 상황을 전제로 더욱 엄격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체제에 의한다. UNCITRAL 논의에서는 이를 세분하여 ① 주의의무, ② 정보공개의무, ③ 자기거래, 기업자산의 사적사용, 기업기회의 유용, 경업 등을 회피할 의무, ④ 선의 및 공정거래 의무로 나누고 있다.¹²⁷⁾ 다만 위 네 가지 구체적인 내용은 위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의 두 유형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²⁸⁾ 어느 경우에나 이러한 의무들이 경영진 등의 모험적인 거래에 따른 실패를 제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이른바 사전정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독립적으로 내려진 경영판단(business judgment)은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

127) A/CN.9/WG.I/WP.82, p.12.

128) 각 국가별 신인의무의 유형 및 내용의 비교에 관하여는 A/CN.9/WG.I/WP.82, p.12 참조.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문제된다. 기업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이 해당 기업 또는 지분권자에 대하여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다만 특히 소규모기업인 경우 지분권자가 해당 기업 또는 다른 지분권자에 대하여 신인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지분권자의 책임을 한정하는 방향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향후 조금 더 논의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인의무를 구성원들간의 합의를 통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구성원들이 이사의 신인의무를 정관 또는 주주간 협의를 통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이를 사전적으로 면책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¹²⁹⁾ 소규모기업인 경우 신인의무도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내부 지배구조의 한 유형이라고 할 것이므로 구성원들의 합의로 엄격성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제10절 소결론 : 향후 전망

분과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사무국은 특히 사업등록(business registration)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에 대하여 각국이 규정하는 모범실무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사무국의 위 사례를 토대로 모델법 초안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여기에는 유한책임, 법인격, 사업등록, 설립절차, 자본요건, 회계처리 및 투명성, 경영자의 책임 등의 다양한 조문이 포함될 것이다.

2014년 하반기 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이를 토대로 개별쟁점상의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사무국에서 마련한 것은 모델법이고 모델법을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 많지만, 구체적인 작업방식

129) 미국의 2006년 통일 유한책임회사법 참조. 미국 브라웨어회사법 제102조 (b)(7) 도 정관을 통하여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고의로 행한 위법행위 등을 예외로 한다.

제 5 장 분과위원회(WG1)에서의 논의 및 검토

을 입법가이드로 할 것인지 모델법으로 할 것이지는 아직 유동적인 측면이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일정 자산에 대하여는 특정 요건 하에서 법인격이 없으면서도 재산 격리(asset separation)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바, 이러한 특유의 경험도 공유될 것이다. 소규모 기업 법제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국가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법제 마련에 있어서는 - 오히려 국제적 성격이 강한 대기업보다도 - 소규모기업의 경우 각국 특유의 현상 및 상황이 반영 될 여지가 많으므로, 상당한 조정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6 장 소규모기업 법제의 방향과 시사점

제 1 절 논의의 방향

UNCITRAL에서 소규모기업 법제에 관한 논의가 분과위원회 차원에서 본격적을 논의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고 많은 부분이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분과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은 ① 입법작업의 형식적 측면의 문제(모델법으로 할 것인지 여부, 단일조직을 입법할 것인지 여부), ② 논의범위의 한정 문제(소규모기업과 영세기업의 범위), ③ 사업등록 간이화, ④ 최저자본요건, ⑤ 유한책임과 법인격, ⑥ 분쟁해결, ⑦ 기업법제 남용방지와 정보공유, ⑧ 내부 지배구조와 신인의무의 크게 8가지 분야이다.

많은 부분이 향후 논의에 따라 크게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소규모기업(MSMEs)’이 무엇이고 ‘영세기업(micro business)’을 그 중별도의 카테고리로 따로 규율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아직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UNCITRAL에서의 논의가 주는 시사점은 일차적으로 그 이슈들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각국이 소규모기업 법제에 관하여 이러한 이슈들을 고민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소규모기업 법제는 적정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쟁점, 예컨대 소규모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피고용자 등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최저자본요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해야 하는지, 소규모기업에 관한 분쟁해결의 특례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관한 논의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 여기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 즉 우리나라의 현재 소규모기업을 위한 조직 형태가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는지의 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문제는 위 논의 중 ⑤ 유한책임과 법인격, ⑧ 내부 지배구조와 신인의무와 직접 연결되고, 나머지 문제들과도 간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소규모기업을 위한 조직형태 논의에 앞서, 제2절에서는 먼저 필자가 생각하는 소규모기업의 특성과 규제의 기본방향을 언급하고자 한다.

제 2 절 소규모기업의 특수성과 규제의 방향

1. 소규모기업의 특수성

근본적으로 소규모기업은 과연 어떠한 특수성을 갖기에 기업법제에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규모기업의 개념 자체를 폭넓게 잡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¹³⁰⁾

먼저 그 지분구조가 폐쇄적이다. 일례로 영국의 경우 소규모기업의 전형인 폐쇄회사(Private Company)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주식을 공모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¹³¹⁾ 우리나라에서도 소규모기업의 지분은 소수의 설립자 또는 그 친족들에 의해 소유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국외자들로부터 지분투자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렇듯 지분구조가 폐쇄적이다 보니 지분거래를 위한 유통시장도 형성되지 않고, 따라서 대중투자자 및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는 일어나지 않는다.¹³²⁾

또한 대부분의 소규모기업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다. 이사가 곧 지분권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거의 모든 지분권자가 회사의 실제 운영에 관심을 갖고 관여하는 형태가 되므로 지분권자와

130) 이하의 내용은 노혁준, 유럽의 폐쇄회사 법제 논의: EU법안과 영국 회사법을 중심으로, 상사법학회 제29권 제4호 (2011), 145-146면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31) 영국 회사법 제755조.

132) Frank Easterbrook & Daniel Fischel, *The Economic Structure of Corporate Law*, Harvard Univ. Press (1991) p.231.

이사회간의 구분이 형해화된다.¹³³⁾ 대규모 회사와 달리 지분권자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¹³⁴⁾ 기업 운영 및 손익 배분에서도 내부적 약정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다. 지분권자에 대한 보상은, 세법인 측면을 고려하여 배당이 아니라 이사직 수행에 대한 보수나 보너스 형태로 지급되는 예가 많다.

이러한 소규모기업과 거래하는 채권자의 측면에서 볼 때, 소규모기업은 그 물적인 기초가 약한 탓에 파산위험이 대규모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그 거래상대방 역시 소규모기업인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소규모기업은 많지 않은 자원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기업활동을 전개한다. 이는 신속한 업종전환 및 다품종 소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자원이 제한적인 탓에 각종 규제와 법리분석에 관한 접근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많다.

2. 법제의 기본 방향

소규모기업에 관한 법제의 개선방안을 논할 때에는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일찍이 소규모기업관련 법제의 개선에 관하여 많은 논의를 해온 영국의 예를 잠시 살펴보자면, 입법의 단순성과 간략성(simplicity and brevity), 소규모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탄력성(flexibility), 비용의 저렴성(inexpensiveness), 개혁의 점진성(incremental approach) 등이 소규모기업 규제입법의 원칙으로 제시되어 왔다. 나아가 회사법 개정검토위원회(The Company Law

133) Company Law Review Steering Group, Final Report - Modern Company Law for a Competitive Economy vol. 1 URN 01/942 (2001) p.27.

134) 이를 대리인 측면에서 분석하면 소규모 기업의 경우 주주와 경영자간의 대리인 비용 문제는 크지 않다. 하지만, 대주주인 경영자가 은퇴할 때의 회사 계속성의 문제, 대주주 또는 소수주주의 기회주의적인 행동, 대주주와 소수주주간의 대치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F. Easterbrook & D. Fischel, Close Corporation and Agency Costs, 38 Stan. L. Rev. 271, 301 (1985)

Review Steering Group)가 2001년 펴낸 최종검토보고서(Modern Company Law: Final Report)에서는 폐쇄회사 관련 입법에 대해 다음 네 가지 원칙을 제안하였다.¹³⁵⁾ 첫째, 폐쇄회사의 행정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자본제도와 공시제도 등 제3자 보호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폐쇄회사에게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명된 제도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회사법의 구조를 폐쇄회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법제를 개선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방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³⁶⁾

먼저 소규모기업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가능해야 한다. 이는 법제가 법학 전문지식 없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소규모기업을 시작하려는 자들에게 다양하고 탄력적인 선택지 내지 조직형태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우리 상사법은 후술하듯 다양한 기업조직 형태를 마련하고 있다. 현행 법제로 소규모기업들의 조직형태에 관한 요청을 다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직형태 관련 규범을 전반적으로 재조정 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기업의 발전, 확장에 따른 적용법규의 변경가능성이다. 만약 소규모기업이 성장하였음에도 기존의 준거규정으로 이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없게 되고 또한 다른 준거규정 또는 조직형태로 변환하기가 어렵다면, 그러한 기업법제는 장기적으로 소규모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135) Company Law Review Steering Group, 위 Final Report, p.25.

136) 이하의 내용은 노혁준, 앞의 논문, 145-147면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다음으로 이렇게 창설된 소규모기업의 내부운영에 관한 문제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규모기업은 그 지분구조가 폐쇄적이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그 내부운영, 즉 사원총회 운영, 결의방식, 수익배분 등에 있어서 다수의 구성원을 전제로 한 강행적 규정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물론 소규모기업의 폐쇄적 성격상 보유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탈출(exit)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안전판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¹³⁷⁾

마지막으로 소규모기업의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문제이다. 이 논문의 소규모기업은 유한책임조직을 전제로 하는바, 이러한 조직들의 창업, 운영을 간이화하고 활성화하면 유한책임제도를 남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규모기업의 파산위험은 대규모기업보다 높은 편이고, 그 파산으로 인한 피해자 역시 다른 소규모기업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유한책임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기업법상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 즉 자본제도와 회계감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간이화한다고 하여 더 많은 기업이 실패하고 소규모기업제도가 남용된다는 증거는 없다. 또한 위 자본제도와 회계감사제도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제 3 절 소규모기업의 조직유형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위하여 활용 가능한 조직의 유형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37) Company Law Review Steering Group, 위 Final Report, p.24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대책으로서 주주대표소송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표 3: 우리 법제상 기업조직의 비교]¹³⁸⁾

		구성원 자치의 정도(내부관계)		
		축 소	확 대	
외부 관계	전구성원 유한책임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
	무한 책임	최저 1인 무한책임	-	합자회사 합자조합
		천원 무한책임	-	합명회사 민법상 조합

위 표 3에서 음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법인격을 갖는 조직이다.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은 2012년 상법 개정을 통해 새로이 도입되었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대외적 책임측면을 중시한다면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유사한 반면, 구성원 자치의 정도를 중점적으로 본다면, 합자회사, 합명회사에 가깝다. 합자조합의 경우 법인격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합자회사와 유사점이 많다. 즉 일부 구성원은 유한책임을 일부 구성원은 무한책임을 지는 혼합적 구조로 되어 있다.

현재 UNCITRAL의 논의 방향은 가급적 법인격이 있으면서 구성원들의 유한책임이 인정되는 형태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특히 2012년 도입된 상법상 유한책임회사를 다른 조직유형들과 간단히 비교해 본다. 아래 표 4의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폐쇄적, 조합적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다. 위 표에서 볼 때,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변동 및 내부 운영에 있어서의 폐쇄적, 조합적 성격은 합명회사에 가

138) 노혁준, 우리나라와 일본의 새로운 공동기업 형태의 비교 검토, BFL 제32호 (2008), 28면.

깝다. 유한회사도 사원의 개성이 존중되는 면은 있으나 유한책임회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유한책임회사는 대외적으로 모든 사원이 유한책임의 특혜를 받으면서도, 대내적으로 폐쇄적, 조합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적 회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 회사유형별 폐쇄적, 조합적 성격 비교]

회사유형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구성원변동	입사	총사원 동의 원칙	증자절차	증자절차
	퇴사	6개월 예고부 퇴사 원칙	원칙적 지분 양도 통해 투자회수	원칙적 지분 양도 통해 투자회수
	지분 양도	총사원 동의 원칙	자유양도 (정관으로 제한가능)	자유양도 (정관으로 제한가능)
내부법률관계	제3자 기관	불허	허용	허용
	기관 구성 자치	강함	강함	중간
	정관 변경	총사원 동의 원칙	특별결의	특별결의
기타	설립 취소	인정	인정	인정 부인 (설립 무효만 인정)
	합병 결의	총사원 동의	특별결의	특별결의

물론 대기업들도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등 구조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식회사 형태에 의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다양한 조직유형의 존재 이유는 주로 소규모기업의 창업 및 운영을 활발하게 지원한다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결국 UNCITRAL에서의 논의 작업도 어떻게 보면 표 3에 있어서의 최적의 기업조직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소규모기업 관련 조직형태가 어떠한 곳에 위치해 있는지를 아는 것은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표 3을 다시 살펴보면 상당한 의문이 발생한다.

먼저 (*)로 표시된 조직, 즉 전구성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비법인 조직의 필요성 여부이다. 일본의 이른바 유한책임사업조합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두 번째 의문점이다. 구성원 자치가 확대되어 있는 조직 중 법인격이 있는 형태와 법인격이 없는 형태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2012 개정 상법이 새로 도입한 합자조합과 관련하여, 기존 합자회사 이외에 이와 유사한 비법인 조직이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구성원 유한책임 조직 중 유한회사의 활용가능성의 문제이다.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의 유한회사 제도를 개선하면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즉 만약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가 서로 대체가능한 것이라면 별도의 조직을 상정해둘 필요가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UNCITRAL에서의 각국의 논의를 보면 유한책임과 법인성을 꼭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이에 대하여 회의적인 반론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유한책임 법리와 법인성이 결부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로 표시된 부분의 조직형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¹³⁹⁾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문은 결국 조직형태간의 중복을 지적하

139) 위 쟁점들에 관한 상세한 검토는 노혁준, 우리나라와 일본의 새로운 공동기업

는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합자회사 이외에 합자조합이 별도로 필요한지에 관한 의문이고, 세 번째 질문은 유한회사 이외에 유한책임회사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에 관한 의문이다. 만약 UNCITRAL의 논의를 통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새로운 조직형태가 추가된다면 그 만큼 중복되는 기업조직이 병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물론 다다익선이라는 관점에서 소규모기업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게 부여할 수도 좋다는 입법론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UNCITRAL의 논의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인적, 물적 자원이 제한된 소규모기업의 입장에서 법제는 단순한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기능과 특성이 중복되는 기업조직은 가급적 하나로 묶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향후 UNCITRAL의 논의 과정에서도 위 우리나라의 각 조직형태가 적절히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UNCITRAL에서의 결정된 입법안이 우리나라에 수용될 때에도 단순한 신설 이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준 조직법제에 편입될 것은 적절하게 변형하여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형태의 비교 검토, BFL 제32호 (2008) 참조.

참 고 문 헌

노혁준, 유럽의 폐쇄회사 법제 논의: EU법안과 영국 회사법을 중심으로, 상사법학회 제29권 제4호 (2011)

노혁준, 우리나라와 일본의 새로운 공동기업 형태의 비교 검토, BFL 제32호 (2008)

오수근, Micro Finance / Micro Business에 관한 UNCITRAL에서의 논의 분석, 글로벌 법제전략 연구 13-32-⑧-8, 법제연구원(2013)

정경영, 정찬형, 소규모회사 활성화를 위한 기업법제 개선 비교연구, 법무부 용역보고서 (2009)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연차보고서 (2013) (available at www.smba.go.kr)

R. Adlung and M. Soprana, World Trade Organization, SMEs in Services Trade - A GATS Perspective, Staff Working Paper ERSD-2012-09, WTO Economic Research and Statistics Division (2012) (available at http://www.wto.org/english/res_e/reser_e/ersd_201209_e.pdf)

F. Easterbrook & D. Fischel, Close Corporation and Agency Costs, 38 Stan. L. Rev. 271 (1985)

K. Kushnir, M. L. Mirmulstein and R. Ramalho,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ound the world: How many are there, and what affects their count?, MSME Country Indicator, World Bank/IFC (2010) (available at <http://www.ifc.org/wps/wcm/connect/9ae1dd80495860d6a482b519583b6d16/MSME-CI-AnalysisNote.pdf?MOD=AJPERES>)

참 고 문 헌

- J. McCahery, E. Vermeulen and P. Priydershini, “A Primer on the Uncorporation”,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 as Law Working Paper No. 198/2013 (March 2013) (available at http://ssrn.com/abstract_id=2200783)
- F. Villamizar, The Colombian Simplified Corporation: An Empirical Analysis of a Success Story in Corporate Law Reform (November 2013) (available at SSRN: <http://ssrn.com>)
- Company Law Review Steering Group, Final Report - Modern Company Law for a Competitive Economy vol. 1 URN 01/942 (2001)
- OECD, Small and Medium Enterprise Outlook, Enterprise, Industry and Services (2000)
- A/CN.9/WG.I/WP.80, Annotated provisional agenda (2 December 2013)
- A/CN.9/WG.I/WP.81, Selected activities of international and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promote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4 December 2013)
- A/CN.9/WG.I/WP.82,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Features of simplified business incorporation regimes (10 December 2013)
- A/CN.9/WG.I/WP.83, Observations by the Goverment of Columbia (2 December 2013)
- A/CN.9/800 Report of Working Group I (MSMEs) on the work of its twenty-second session (10-14 February 2014)
- A/68/168 Cooperatives in social development and the observance of the International Year of Cooperatives (22 July 2013)

참 고 문 헌

A/CN.9/698 - Microfinance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2010)

A/CN.9/756 - Selected legal issues impacting microfinance (2012)

A/CN.9/727 - Legal and regulatory issues surrounding microfinance (2011)

A/CN.9/780 - Microfinance: creating an enabling legal environment for micro-busines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2013)